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전 원 회 의

의 결 제 2011 - 069호

2011. 6. 10.

- 사 건 번 호 2010카조3119
- 사 건 명 6개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 피 심 인
1.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11
대표이사 하성민
대리인 변호사 박한우, 박종우
 2. 주식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26-28
대표이사 신○○
대리인 법무법인 아이트리
담당변호사 공태용
 3. 주식회사 케이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대표이사 이석채
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회사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송준현, 안길한
 4. 주식회사 케이티뮤직
서울 구로구 구로동 197-5, 삼성 IT밸리 13층

대표이사 김민욱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현철, 주현영, 한종연

5. 씨제이이엔엠 주식회사(구 엠넷미디어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상암동 1606, CJ E&M 센터 6~7층
대표이사 하대중

6. 주식회사 네오위즈인터넷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6-17, 동궁빌딩 12층
대표이사 이기원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강수진, 정성무, 조희성

7. 신○○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5, 삼풍아파트 11-501
대리인 법무법인 아이트리
담당변호사 공태용

8. 박♀♀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08-2 래미안방배아트힐 103-1501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현철, 주현영, 한종연

9. 박♥♥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135, 옥빛마을 1711-1402

주 문

1. 피심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주식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케이티, 주식회사 케이티뮤직, 씨제이이엔엠 주식회사, 주식회사 네오위즈인터넷은 Non-DRM 월정액 다운로드 상품 및 복합상품의 가격 및 곡수, 인상시기와 인상폭, Non-DRM 월정액 다운로드에 DRM조치를 한 상품의 가격, MR상품의 가격, 자동연장 결제할 인 적용여부, 단품 다운로드 상품(DRM, Non-DRM)의 가격, 온라인 무료체험 이벤트 적용여부 등에 대하여 합의함으로써 국내온라인음악서비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주식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케이티, 주식회사 케이티뮤직, 씨제이이엔엠 주식회사, 주식회사 네오위즈인터넷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1)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 1,964,000,000원
- (2) 주식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 : 8,668,000,000원
- (3) 주식회사 케이티 : 820,000,000원
- (4) 주식회사 케이티뮤직 : 940,000,000원
- (5) 씨제이이엔엠 주식회사 : 622,000,000원
- (6) 주식회사 네오위즈인터넷 : 718,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3. 피심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주식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케이티뮤직, 주식회사 네오위즈인터넷, 신○○, 박♀♀, 박♥♥을 각 고발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주식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케이티, 주식회사 케이티뮤직, 씨제이이엔엠 주식회사, 주식회사 네오위즈인터넷¹⁾은 서비스업 또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2 위 피심인 회사들은 다음 2.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2008. 5. 28.부터 2011. 2. 23.까지 Non-DRM 월정액 다운로드 상품 및 복합상품, Non-DRM 월정액 다운로드 상품에 DRM조치를 한 상품, MR 상품, 단품 다운로드 상품(DRM, Non-DRM)의 가격 등을 공동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하였는바, 일부 피심인 회사들의 합병, 영업양도 등과 관련 피심인 적격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1) SKT, 로엔

3 이 사건 공동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SKT는 2008. 12. 31. 음악관련 사업을 로엔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영업양도일을 기준으로 2008. 12. 31까지는 양도회사가, 2009. 1. 1.부터는 양수회사가 범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SKT 및 로엔 모두 피심인 적격이 있다.

2) KT, KT뮤직

4 주식회사 케이티프리텔(이하 ‘KTF’라 한다)은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으나, 2009. 3. 31. 음악관련사업을 주식회사 케이티에프뮤직(이하 ‘KTF뮤직’이라 한다)에 양도하였으므로, KTF는 영업양도일을 기준으로 2009. 3. 31.까지 이 사건

1) 이하에서는 각각 ‘SKT’, ‘로엔’, ‘KT’, ‘KT뮤직’, ‘씨제이이엔엠’, ‘네오위즈인터넷’이라 하되, 구체적 행위사실을 설시함에 있어서는 행위 당시 당사자의 상호로 약칭하며, 위 피심인들만을 언급할 경우 ‘피심인 회사들’이라고 한다.

공동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다시 KTF는 2009. 6. 2.자로 KT에 흡수합병되었으므로 결국 KT가 위 영업양도일인 2009. 3. 31.까지의 KTF의 범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²⁾하게 되고 따라서 KT는 피심인 적격이 있다. 한편 영업양수인인 KTF뮤직은 2009. 6. 4. 상호를 KT뮤직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던바, 위 영업양수 이전에도 이 사건 공동행위에 관여하였으므로 영업양수일과 상관없이 범위반행위 전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3) 씨제이이엔엠

5 이 사건 공동행위는 엠넷미디어 주식회사(이하 ‘엠넷’이라 한다)가 직접 실행하였으나, 씨제이이엔엠은 2011. 3. 3. 자로 엠넷을 흡수합병하였으므로 엠넷의 범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은 씨제이이엔엠이 부담하므로 씨제이이엔엠은 피심인 적격이 있다.

4) 네오위즈인터넷

6 이 사건 공동행위는 주식회사 아인스디지털(이하 ‘아인스디지털’이라 한다)이 직접 실행하였던 바, 2009. 3. 3. 상호를 주식회사 네오위즈넥스로 변경하고, 2010. 4. 16. 주식회사 네오위즈인터넷을 흡수합병하면서 상호를 주식회사 네오위즈인터넷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아인스디지털 및 네오위즈넥스의 범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은 네오위즈인터넷이 부담한다. 따라서 네오위즈인터넷에게 피심인 적격이 있다.

나. 일반현황

7 피심인 회사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2009.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2) 법 제55조의 3 제2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병 후 존속 회사인 KT는 동 규정에 의거 소멸회사인 KTF의 범위반행위 책임을 부담하며, 이하 씨제이이엔엠과 네오위즈인터넷도 같은 규정에 의거 이 사건 공동행위의 책임을 부담한다.

피십인	자본금	매출액	자산총계	당기순이익	상시종업원수	설립일자
SKT	44,639	12,101,184	19,297,633	1,288,339	4,372	1984. 4. 20.
로엔	12,646	101,427	99,336	4,513	128	1982. 7.
KT	1,564,499	15,906,174	24,342,475	516,533	30,860	1982. 1. 1.
KT뮤직	14,883	38,493	33,901	△5,436	107	1991. 2. 7.
씨제이이엔엠)	24,219	128,772	151,612	△837	277	1994. 6. 29.
네오위즈인터넷	6,323	50,462	31,729	6,051	119	2002. 6. 3.

* 자료출처 : 피십인 회사들 제출

다. 국내 음악산업 현황

1) 음악산업 분류

8 음악산업은 크게 음반산업, 디지털음악산업, 음악공연산업, 노래연습장업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고, 이는 다시 다음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부적으로 나뉜다.4)

<그림 1>

음악산업의 분류



9 음악산업은 보통 전통적 의미의 음반관련 산업만을 의미하였으나, 2000년 2월 네오위즈인터넷5)이, 같은 해 5월 주식회사 소리바다(이하 ‘소리바다’라 한다)6)가 온

3) 2009.12.31.기준이므로 씨제이이엔엠은 엠넷, 네오위즈인터넷은 네오위즈빅스의 일반현황을 말한다.

4) 이와 같은 분류는 소비자에게 어떤 형태로 음악이 전달되느냐를 기준으로 나눈 것이다. 즉, 음반산업은 음악을 유형물인 매체에 고정하여 소비자가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디지털음악산업은 디지털화하여 무형물의 컴퓨터파일 형태로 소비자들이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을, 공연산업은 콘서트와 뮤지컬 등 실제 공연을 통하여 소비자들이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5) 네오위즈인터넷이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사이트명 : 벅스)를 시작한 시기이다. 당시 다운로드 서비스 등

라인에서 음악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면서 그 영역이 온라인에서의 음악산업까지 확장되었다.

10 참고로 디지털음악산업 중 모바일음악서비스업은 이동통신을 통한 음악서비스업, 온라인음악서비스업은 온라인 즉 인터넷을 통하여 음악서비스를 하는 사업, 모바일·온라인음원가공 및 제공업은 음원을 벨소리, 통화연결음⁷⁾ 등에 적합하게 가공하여 이동통신업자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2) 음악산업 규모

11 2007년⁸⁾ 국내 음악산업 시장 총 규모는 1조 8,887억 원으로 음반산업이 763억 원(4%), 디지털음악산업이 4,276억 원(23%), 음악공연산업이 2,236억 원(12%), 노래연습장업이 1조 1,612억 원(61%)을 차지하였다. 이는 2006년에 비하여 음반산업은 60억 원, 노래연습장업은 700억 원 정도 감소하고, 디지털음악산업은 700억 원, 음악공연산업은 350억 원 정도 증가한 결과로서, 전체적으로 2006년에 비해 2007년 국내 음악시장 규모는 소폭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12 2003년 이후 국내음악산업 매출 추이는 다음 <표 2>와 같다.⁹⁾

<표 2> 국내음악산업 매출 추이

(단위 : 억 원)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합계
음반	1,866	1,338	1,087	848	763	5,902

은 하지 않았다. 이후 서비스를 유료화하면서 다운로드 서비스도 하기 시작했다. 스트리밍(streaming)이란 인터넷 상에서 음성이나 동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6) 소리바다의 음악서비스는 P2P(Peer-to-Peer)를 이용한 서비스로서, 사용자의 개별 컴퓨터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역할을 동시에 같이 수행한다. 따라서 P2P를 최상으로 발전시킬 경우 중앙서버 없이도 사용자들은 디지털 파일 즉 동영상, 음악 등을 자유롭게 다운로드할 수 있다.

7) 벨소리는 이동통신 사업자 외에 온라인음악서비스 사업자를 통하여도 소비자에게 제공가능하나, 통화연결음(흔히 킬러링이라고 한다)은 이동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여야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다.

8) 현재 가장 최근 통계가 2007년 통계로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출간한 2008년 음악백서가 그 출처이다.

9) 2001년 이전 통계는 정확한 통계 자료가 없어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2000년 이전 음반산업 규모는 약 4,000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디지털	1,850	2,112	2,621	3,562	4,276	14,421
공연 ¹⁰⁾			1,451	1,887	2,236	5,574
노래방	11,254	14,431	11,431	12,321	11,612	61,049
합계	14,970	17,881	16,590	18,618	18,887	86,946

* 자료출처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8년 음악산업백서

13 위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통적 의미의 음악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음반산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매출하락의 시작은 디지털음악시장의 형성 및 발전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즉, 디지털 음악산업이 발달할수록 전통적 의미의 음악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음반산업은 쇠락하는 반면, 디지털 음악산업은 그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14 음반산업의 쇠락이 디지털음악산업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음악산업 각 분야별 매출액 추이를 나타낸 다음 <그림 2>에서 더욱 잘 나타난다.

<그림 2> 음악산업 각 분야 매출추이



3) 온라인음악서비스시장 현황

15 디지털 음악산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시장규모가 커져 왔음을 위 <그림 2>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그런데 디지털 음악산업을 이루는 모바일음악서비스업, 온라인음

10) 공연산업의 공식 통계가 2005년부터 집계되고 있어 2003년, 2004년은 정확한 매출액 규모를 확인할 수 없다.

악서비스업, 모바일·온라인음원가공 및 제공업, 음원대리중개업에 대한 세부적인 매출은 음악백서상의 통계¹¹⁾보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이라 한다)의 매출액자료가 더 정확하다. 왜냐하면 음저협은 한국에서 유통되는 거의 모든 음악(97% 이상)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고, 그 결과 온라인음악서비스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사업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음저협에 음원관련 매출액을 의무적으로 통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음저협의 매출액 자료(부가세 제외)를 기준으로 하여 온라인음악서비스 시장 현황 및 사업자별 시장 점유율 등을 산출하기로 한다.

16 온라인음악서비스 매출액 규모는 다음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 1,306억 원에서 2007년 1,570억 원, 2008년 1,577억 원, 2009년 1,901억 원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 상품의 경우에는 정액제 다운로드서비스(Non-DRM)와 곡당 다운로드서비스의 성장세가 크다. 이에 비해 MR 매출액은 2007년까지 매출 성장세를 보이다가 Non-DRM¹²⁾ 상품이 출시된 2008년 이후에는 매출 규모가 상당폭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온라인음악서비스 시장 매출액 추이

(단위 : 백만 원)

-
- 11)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온라인음악서비스업 통계는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을 하는 166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돌려 그 답변을 토대로 온라인음악서비스 매출액 규모를 산출한 것인데, 조사대상 사업자 중 약 120~130개 남짓 정도만 답변을 하고 나머지는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답변을 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규모가 비슷한 사업자의 매출액으로 해당사업자의 매출액을 추정하여 후 전체 온라인음악서비스 시장의 매출액을 산출한다. 따라서 사용료 징수를 위해 신탁된 음원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한 실제 매출액을 집계하는 음저협 제출 매출액 보다 정확성 면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 12) DRM조치를 하지 않은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태를 “Non-DRM”이라고 한다. 여기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즉 디지털 저작권 관리란 디지털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 및 서비스를 말한다.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사진·음악·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이와 같은 유형의 저작물에 대한 불법복제 및 무단사용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는바,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저작물이 저작권자가 허락한 한도 내에서 사용되도록 저작물에 기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필요성에서 생겨난 것이 DRM인 것이다. DRM은 현재 복제방지 등 뿐만 아니라 기업문서 보안, 디지털 방송 등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①스트리밍	②곡당 다운로드	③정액제 다운로드 ¹³⁾	④MR	BGM	합계
2006년	21,556	9,881	7,802	56,691	34,755	130,685
2007년	22,337	11,978	25,786	58,908	38,063	157,072
2008년	19,700	13,000	32,910	51,120	41,008	157,738
2009년	23,876	17,878	65,958	41,938	40,473	190,123

* 자료출처 : 음저협

- ① 스트리밍은 월 일정금액(예: 3,000원)을 내고 인터넷 상에서 음악을 실시간으로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 ② 곡당 다운로드는 1곡당 일정금액(예: 500원)을 내고 음악을 이용자의 PC 에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 ③ 정액제 다운로드는 월 일정금액(예: 5000원)을 내고 사업자가 정한 곡수의 범위 내(예 : 무제한 또는 40곡)에서 Non-DRM 음원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④ MR(Monthly Rental)은 월 일정금액(예: 5,000원)을 내면 결제기간 동안 인터넷 사이트에서 휴대폰으로 스트리밍 서비스 및 다운로드서비스를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DRM조치를 해 놓은 서비스를 말한다. 인터넷과 휴대폰,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를 결합한 서비스라고 하여 ‘유무선 연동기간제 통합서비스’라고 하기도 한다. 스트리밍이든 다운로드든 결제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기간임대제’서비스라고 하기도 한다. 물론 다음달에도 결제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이미 다운로드 받은 음악파일을 재생하여 들을 수도 있다.

17 참고로 배경음악서비스(BGM¹⁴⁾)의 경우 이 사건 피심인 회사들의 매출액은 거의 없고, 사이월드¹⁵⁾가 배경음악 전체 매출의 95% 이상을, 그 나머지를 네이버, 다음 및 기타 사업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 온라인음악서비스 사업자별 시장점유율은 BGM을 제외하고 산출하였다.

18 2008년 기준 각 온라인음악서비스 업체별 시장점유율을 다음 <표 4>를 통하여 살펴 보면, SKT의 멜론이 39.1%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고, 그 뒤를 소리바다와 아인스디지털의 벅스, KTF의 도시락 등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피심인 회사들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75.7%에 달한다. 나머지 24.3%는 소리바다가 18.9%, 기타 160여개 사업자들이 5.4%이다.

13) 정액제 다운로드는 Non-DRM 월정액 다운로드를 말한다. 다만, 2008년 Non-DRM 월정액 다운로드가 징수규정상 허용되기 전까지는 신탁 3단체가 징수규정에 의해 Non-DRM 월정액 사용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2008년 이전 매출액은 사용료가 아니라 과거 권리침해에 대한 보상금을 의미한다. 다만, 징수규정 상에 없는 서비스도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는 신탁 3단체로부터 잠정적 허락을 받아 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 사용료는 새로운 서비스가 징수규정 개정을 거쳐 반영된 후 소급하여 정산하게 된다.

14) BGM은 Background Music 의 약자이다.

15) 미니홈피 서비스를 하는 사이트로서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가 운영하고 있다.

<표 4>

온라인음악서비스 사업자별 시장점유율

(단위 : 백만 원, %)

사업자명	사이트명	스트리밍	단품 다운로드	MR	Non-DRM 정액제	합계	점유율
SKT(현 로엔)	멜론	3,055	4,638	35,420	2,592	45,705	39.1
엠넷(현 씨제이이엔엠)	엠넷	7,926	705	431	2,286	11,348	9.7
아인스디지털 (현 네오위즈인터넷)	박스+쥬크온	5,234	3,527	860	3,344	12,965	11.1
KTF(현 KT)	도시락	625	905	10,920	520	12,970	11.1
소리바다	소리바다				22,064	22,064	18.9
KTF뮤직(현 KT뮤직)	뮤즈	2,005	1,590	1,432	498	5,525	4.7

* 자료출처 : 음저협

19 온라인음악서비스 시장 참여사업자가 166개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약 160개 사업자가 5.4%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소리바다와 이 사건 피심인 회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의 경우 그 규모가 매우 영세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미미하다는 것을 또한 미루어 알 수 있다. 각 상품별로 매출액을 살펴 보면 MR상품은 SKT와 KTF가, Non-DRM은 소리바다가, 스트리밍은 엠넷과 아인스디지털이, 단품다운로드는 SKT와 아인스디지털이 각각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4) 온라인음악서비스를 위한 여러 가지 요건

20 인터넷을 통한 음악서비스 즉 온라인음악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는 관련된 음원 권리자들 모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저작권법상 음원권리자에는 작사 및 작곡자¹⁶⁾, 실연자¹⁷⁾, 음반제작자¹⁸⁾가 있다.¹⁹⁾ 이용허락의 순서에는 제약이 없다. 작사·작곡자, 실연자, 음반제작자는 저작권법상 일정한 요건 하에서 문화체육

16) 편곡자가 있는 경우 편곡자도 포함한다. 작사·작곡자 및 편곡자는 저작자로서 이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호)

17) 실연자란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4호)

18) 음반제작자란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6호)

19) 우리가 실생활에서 듣는 노래는 작사가와 작곡가가 곡을 만든 후 이를 특정 가수가 부르는 것을 음반제작자가 매체(유형물일 경우 음반, 무형물일 경우 디지털음악)에 저장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해당 곡을 음악사업을 영위하는데 이용하기 위해서는 위 3권리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다.

관광부(이하 ‘문화부’라 한다)로부터 허가²⁰⁾를 받은 신탁관리단체에게 권리를 신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비스사업자는 신탁관리단체의 사용허락을 받으면 된다. 현재 문화부의 허가²¹⁾를 받아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는 단체는 음저협,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이하 ‘음실연’이라 한다),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이라 한다)가 있다²²⁾.

21 이 중 음저협²³⁾은 작사자 및 작곡자들의 권리를, 음실연²⁴⁾은 실연자들의 권리를, 음제협은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각기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신탁비율과 관련하여 음저협은 한국에서 유통되는 거의 모든 노래(약 97% 이상이라고 한다)에 대한 작사·작곡자 및 편곡자에 대한 권리를, 음실연은 한국에서 유통되는 음악의 약 70% 정도 즉 외국곡을 제외한 나머지 곡에 대한 실연자의 권리를, 음제협은 유통음악의 약 3%(좀 더 크게 보는 경우 약 5%)²⁵⁾에 대한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각기 신탁받아 관리를 하고 있다.²⁶⁾

22 권리를 신탁하지 않은 음반제작자는 직접 권리 행사를 하거나 음원유통사업자들과 음원대리 중개사들이 권리를 대행하도록 한다. 음실연에 권리를 신탁하지 않은 외국곡 실연자의 경우에는 소니뮤직, 유니버설 뮤직, 워너뮤직 등 외국음반유통사가

20) 저작권법 제105조 제1항에 의하면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6호)

21) 음저협은 1988. 2. 23.에,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는 2000. 11. 14.에,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2003. 3. 17.에 각각 문화부로부터 저작권 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았다.

22) 이하에서는 위 3 단체를 ‘신탁 3단체’라 한다.

23) 음저협은 KOMCA라고도 흔히 하는데, 이는 KOREA MUSIC COPYRIGHT ASSOCIATION의 약자이다.

24) 음실연의 2008. 2. 18. 전까지의 명칭은 (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였다. 약칭하여 ‘예단연’이라고 하였다. 명칭 변경 이유는 그 이전까지 실연자 단체도 회원자격을 부여하였으나 실연자 개인에게만 회원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을 변경하였기 때문이다.

25) 이는 한국에서 유통되는 곡의 매출액 기준으로 한 비율이다. 곡수 기준으로 할 경우 음제협의 관리비율은 좀 더 올라간다.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음제협의 경우 지나간 곡에 대한 권리신탁 비율은 매우 높은 반면 최신곡에 대한 권리신탁 비율은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최신곡은 디지털음악산업발전협의체 회원사들의 보유비율이 절대적으로 높다. 디지털음악산업발전협의체(이하 ‘디발협’이라 한다)는 독립된 조직이 없는 임의 단체로서 음원유통사업자들의 친목 모임 비슷한 것이었는데, 이후 독립된 인적, 물적 조직을 갖춘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가 되었다.

26) 음제협은 최근 곡에 대한 보유비율이 매우 작고, 대신 옛날 곡에 대한 보유비율이 높다. 최근 노래의 경우에는 이 사건 피심인인 로엔, 씨제이이엔엠 등이 상당한 비율로 보유하고 있다.

실연자의 권리까지 포괄하여 권리를 행사한다.²⁷⁾ 저작권자인 작사·작곡자, 편곡자 등은 외국곡을 포함하여 한국에서 유통되는 거의 모든 음악을 음저협에서 관리하므로 비신탁권리자를 상정할 여지가 거의 없다.²⁸⁾

23 저작권자(작사·작곡자 및 편곡자) 및 저작인접권자(실연자 및 음반제작자)²⁹⁾는 음원 사용 허락을 해 주는 대신 곡에 대한 사용료를 이용자로부터 받는다. 저작권법은 저작권 신탁 3단체가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독점적으로 신탁 받아 관리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문화부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³⁰⁾ 신탁 3단체는 위와 같이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징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징수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신탁 3단체는 징수 규정 내용에 따라 온라인음악서비스 사업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24 신탁 3단체의 사용료 징수규정은 비신탁 음반제작자가 자신의 음원에 대한 사용료 수준을 정할 때에도 척도로서 사용된다. 왜냐하면 비신탁 음반제작자의 경우 음원사용료에 대한 기준이 특별히 없고, 음반제작자의 일부가 음저협에 권리를 신탁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신탁 음반제작자가 권리를 신탁한 음반제작자와 매우 차이가 나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25 그러므로 신탁 3단체의 징수규정 개정은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음악서비스사업자에게 뿐만 아니라 비신탁 음반제작자 또는 이들의 권리를 위탁 또는 위임받아 행사하는 음원유통사업자(이하 ‘비신탁 음반제작자등’이라 한다)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비신탁음반제작자등은 위 신탁 3단체의 사용료 수준을 기준으로 참고할 뿐 이에 따를 의무는 없다.

27) 외국은 전송과 관련하여서 실연권을 한국처럼 독립하여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전송의 경우 음원에 대한 사용허락은 저작권자인 작사·작곡자 등과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또는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대행하는 음반유통사)로부터 받으면 된다.

28) 서태지와 같은 가수는 음저협을 포함한 신탁 3단체에 권리를 신탁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권리를 행사한다.

29)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대한 본연의 권리자로서 저작물에 대하여 가장 광범위한 권리를 가진다. 이에 비해 저작인접권자는 저작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 중 일부만을 보유한다.

30)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 문화부장관은 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의 경우에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된 내용을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05조 제6항)

26 참고로 신탁 3단체는 온라인음악서비스 사업자들로부터 사용료 징수규정대로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받기만 한다면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이나 구성 등에 대하여 간섭할 권한이 없다. 비신탁음반제작자들의 경우에도 이는 동일하다.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

가. 합의 개요

27 신탁 3단체의 징수규정이 Non-DRM 음원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2008. 2. 28. 개정되면서 시장 환경이 급변하게 되자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들은 기존 DRM상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매출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Non-DRM 상품 가격, 구성, 기존 상품의 가격 등에 대한 합의를 하게 되었다.³¹⁾

나. 합의 배경

28 신탁 3단체의 징수규정 개정이 신탁 3단체에게 뿐만 아니라 사용료를 지불하는 온라인음악서비스 사업자, 나아가 비신탁음반제작자들에게도 중요한 문제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신탁 3단체의 징수규정이 2008. 2. 28. 개정되면서 그동안 불법이었던 Non-DRM 다운로드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월정액 120곡 이하 또는 무제한으로 Non-DRM 상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이는 그 이전까지 DRM 다운로드 서비스만을 하고 있던 이 사건 온라인음악서비스 사업자(소리바다 제외)에게 매우 큰 시장 환경의 변화였다.

31)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은 디지털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을 총칭하는 것으로 디지털화된 저작물에 여러 가지 제한을 해 놓는 것을 말한다. 음원의 경우 기기 및 기간에 DRM 적용을 하였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DRM음원과 Non-DRM 음원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RM 음원	Non-DRM 음원
재생 가능 기기	등록된 기기(보통 1개) 이외에서 음원 재생 불가	아무 기기나 재생 가능
재생 기간	1개월이 지나면 음원 재생 불가	기간에 제한없이 재생 가능
파일 복제	파일 복제 불가능	자유롭게 파일 복제 가능

29 특히 월정액 서비스는 이전 징수규정에서 DRM 서비스인 MR³²⁾만 허용되고 있던데 반하여 2008년 개정 징수규정에서는 Non-DRM 월정액 120곡 이하 또는 무제한 서비스까지 허용함으로써 월정액제 서비스에 대한 규정을 대폭 개정하였고, 통합서비스³³⁾는 이전 징수규정의 경우 별도 규정³⁴⁾이 없었던 데 반하여 2008년 개정 징수규정에서는 통합서비스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스트리밍 사용료와 다운로드 사용료를 각각 분리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곡당 다운로드의 경우 이전 징수규정에서는 일반 온라인 서비스와 P2P³⁵⁾를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나 2008년 징수규정에서는 위 구분을 폐지하고 Non-DRM 곡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정산하도록 한 점이 이전 징수규정과 2008년 징수규정이 크게 달라진 점이었다.

30 2008. 2. 28. 승인된 징수규정(발효 2008. 5. 1.)이 이전 징수규정과 달라진 점을 간단하게 비교하여 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다음 <표 5>에서 ‘저’는 음저협을, ‘실’은 음실연을, ‘제’는 음제협을 말한다.

<표 5> 신탁 3단체 징수규정 개정 전후 비교

서비스 유형	2008. 2. 28. 개정 전 징수규정	2008. 2. 28. 개정 후 징수규정
--------	------------------------	------------------------

32) MR(Monthly Rental)은 월 일정금액(예 : 5,000원)을 내면 결제한 기간 동안 인터넷 사이트에서 휴대폰으로 스트리밍 서비스와 다운로드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DRM조치를 해 놓은 서비스를 말한다. 인터넷과 휴대폰,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를 결합한 서비스라고 하여 ‘유무선 연동기간제 통합서비스’라고 하기도 한다. 스트리밍이든 다운로드든 금전을 지불한 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기간임대제’서비스라고 하기도 한다. 물론 다음달에도 결제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이미 다운로드 받은 음악파일도 재생하여 들을 수 있다.

33)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를 같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고 결합상품, 복합상품이라고도 한다.

34) 이전 징수규정에서는 월정액제 및 통합서비스 구분없이 MR 규정이 있었을 뿐이었고, 그 결과 시장에서도 MR 상품만이 월정액제 통합서비스로서 판매되고 있었으므로 MR 이외에 별도의 통합서비스 규정이 있을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2008년 개정 징수규정에서는 Non-DRM 월정액제 서비스가 생기면서 MR 이외에도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을 결합한 통합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통합서비스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한 것이었다.

35) P2P는 종래 서버와 클라이언트PC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업로드, 다운로드를 사용자PC 끼리 직접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을 말한다. 즉 IP주소를 만들어 외부에서도 자유롭게 가상 IP 주소를 찾아 PC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기술로 음악은 물론 동영상·비디오·문자파일 등의 정보를 검색엔진 없이 상대방과 1대1로 공유할 수 있게 해 준다. 중간매개자 없이 정보 제공자와 정보 수신자가 직접 원하는 정보를 교환할 수 있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손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점이 있다. 미국에서 MP3 파일 공유 서비스로 유명한 냅스터, 이 사건 피심인 중 하나인 소리바다가 이 기술의 대표적 사용자라 할 수 있다. 이 기술은 특성상 DRM 조치를 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전 징수규정에서 P2P 관련 곡당 다운로드 규정은 Non-DRM 곡당 다운로드를 상정한 것이다. 그러나 P2P 업체는 Non-DRM 월정액제 서비스 이외 곡당 다운로드 서비스는 하지 않기 때문에 사문화된 규정이었다.

스트리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둘 중 많은 금액 - (저) 월정 150원 x 가입자수, 매출액의 5% - (실) 월정 75원 x 가입자수, 매출액의 2.5% - (제) 월정 1,050원 x 가입자수, 매출액의 35% 	○ 좌동
곡당 다운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둘 중 많은 금액 - (저) 곡당 45원 x 다운로드횟수, 매출액의 9% - (실) 곡당 25원 x 다운로드횟수, 매출액의 5% - (제) 곡당 200원 x 다운로드횟수, 매출액의 40% <p>○ P2P : 둘 중 많은 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 곡당 50원 x 다운로드횟수, 매출액의 10% - (실) 곡당 25원 x 다운로드횟수, 매출액의 5.5% - (제) 곡당 257.5원 x 다운로드횟수, 매출액의 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둘 중 많은 금액, 복제제한(DRM) 조치시 20% 할인 - (저) 곡당 45원 x 다운로드횟수, 매출액의 9% - (실) 곡당 25원 x 다운로드횟수, 매출액의 5% - (제) 곡당 200원 x 다운로드횟수, 매출액의 40% <p>※ 기존 곡당 규정과 P2P 규정 통합</p>
월정액 다운로드	<p>□ 월정액 서비스는 유무선 연동기간제 통합 서비스(MR)가 유일</p> <p>○ MR 서비스 : 둘 중 많은 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 월정 200원 x 가입자수, 매출액의 8.2% - (실) 월정 100원 x 가입자수, 매출액의 4.5% - (제) 월정 2,000원 x 가입자수, 매출액의 40% <p>* 다만 음제협 사용료 중 월정액 2,000원은 첫달의 경우이고, 그 후는 1,800원</p>	<p>□ 서비스 유형에 따라 기간(곡수) 제한과 무제한으로 구분, 복제 제한 조치(DRM)시 20% 할인</p> <p>○ 기간 제한 또는 곡수 제한(120곡 이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 월정 410원 x 가입자수, 매출액의 8.2% - (실) 월정 225원 x 가입자수, 매출액의 4.5% - (제) 월정 2,000원 x 가입자수, 매출액의 40% <p>○ 무제한 다운로드 월정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 월정 900원 x 가입자수, 매출액의 10% - (실) 월정 450원 x 가입자수, 매출액의 5% - (제) 월정 4,050원 x 가입자수, 매출액의 45% <p>□ 복합상품(S+D) 규정 신설, 스트리밍 사용료 및 다운로드 사용료 분리과금, DRM 조치시 20% 할인</p> <p>○ (저, 실, 제) 스트리밍 사용료 x 0.35 + 다운로드 사용료</p>

※ 주문형 배경음악(미니홈피 BGM)도 신탁 3단체 징수규정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기재하지 않았다.

31 더구나 소리바다가 신탁 3단체와의 저작권 분쟁을 2006년도에 종료하고 Non-DRM 무제한 월정액 서비스를 월 4,000원³⁶⁾에 소비자에게 이미 제공하고 있던

36) 소리바다는 2006년 상반기에 신탁 3단체와 저작권관련 분쟁에 대한 합의를 한 이후 2006. 7. 10. 무료서비스를 유료서비스로 전환하였다. 유료화 당시 소리바다의 Non-DRM 무제한 월정액 서비스의 가격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2008년 징수규정 개정 내용은 기존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들인 소리바다를 제외한 이 사건 피심인 회사들에게 더욱 큰 위기였다.

32 왜냐하면 시장이 확대되었다고는 하나 이미 소리바다가 확대된 시장에서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어 소리바다 이외 이 사건 피심인 회사들은 후발주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Non-DRM 음원은 저장기간, 복제 등에 아무런 제약이 없어 DRM 음원에 비하여 활용폭이 넓고 효용이 높아 비슷한 가격일 경우 소비자들은 Non-DRM 상품을 선택하려 할 것이므로 Non-DRM 상품은 어떤 식으로든 DRM 관련상품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33 따라서 기존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였던 소리바다를 제외한 이 사건 피심인 회사들은 소리바다가 이미 선점하고 있는 Non-DRM 월정액 서비스 시장의 틀을 바꿔 소리바다의 선도주자로서의 지위를 약화시킴과 동시에 Non-DRM 상품의 가격 및 구성을 조정하여 기존 DRM 상품의 경쟁력을 최대한 유지시키도록 하는 것이 공통의 문제였다.³⁷⁾

34 그 결과 피심인 회사들은 이미 소리바다가 서비스 하고 있었던 Non-DRM 무제한 월정액제 서비스를 출시할지, 만약 Non-DRM 월정액 무제한 상품을 출시하지 않을 경우 DRM 상품에 비추어 Non-DRM 상품의 곡수, 가격을 어떤 수준으로 결정할지 여부, 자동연장 결제할인 등 기존 상품에서의 할인제도를 Non-DRM 상품 및 기존 DRM상품에 동일하게 적용할지, 마케팅은 어떤 방식으로 할지 등에 대하여 합의를 하기에 이르렀다.

다. 합의의 성립

35 신탁 3단체의 사용료 징수규정 시행³⁸⁾이 임박하게 되자 SKT, KTF, 아인스디지

3,000원 이었으나 신탁 3단체와 저작권 분쟁 합의에서 서비스 유료화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 가격을 인상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2007. 7. 2. 서비스 가격을 1,000원 인상하여 4,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37) 그 결과 당초 합의에 소리바다는 가담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소리바다를 제외한 이 사건 피심인 회사들은 이미 소리바다가 이용자를 다수 확보하고 있는 Non-DRM 월정액 무제한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든 바꿈으로써 소리바다가 Non-DRM 월정액 상품에서 가지고 있는 선점이익을 없애고 싶어 했으므로 소리바다는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2008년 5월 합의에 가담할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탈, 엠넷의 4개사는 징수규정 개정 이후 2008. 4. 1. 처음으로 실무자 미팅을 가진 것을 시작³⁹⁾으로, 4. 8. SKT, KTF, 엠넷의 3개사 대표자 회의⁴⁰⁾ 및 4. 11. 실무자 긴급회의⁴¹⁾, 4. 16. 4개사 회의⁴²⁾, 4. 24. SKT, KTF, 엠넷 3개사 실무자 회의, 5. 22. 아인스디지털에서 열린 4개사 실무자 회의⁴³⁾ 등을 하는 등 Non-DRM⁴⁴⁾ 음원을 출시할 것인지, 출시한다면 곡수 무제한 상품을 판매할지, 곡수제한의 경우 기존 상품과의 관계에서 어떤 가격대에서 몇 곡으로 할 지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 하였다.

1) 2008. 5. 28. 합의(상품 가격 및 상품 구성 등에 대한 합의)

³⁶⁾ 피심인 SKT, 로엔, KTF, KTF뮤직, 엠넷, 아인스디지털은 위와 같은 지속적인 협의 결과 2008. 5. 28. 이화여자대학교 SK텔레콤관에서 열린 4개사 징수규정안 관련 실무자 회의⁴⁵⁾에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다.

³⁷⁾ ① Non-DRM 월정액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곡수 무제한은 허용하지 않고, 곡수 제한상품만 출시하되 40곡은 5,000원에, 150곡은 9,000원으로 한다.⁴⁶⁾

38) 저작권 신탁 3단체의 사용료 징수규정 발효일은 2008. 5. 1.이었다.

39) 이 당시 회의는 KTF 본사 3층 회의실에서 열렸고, 참석자는 SKT에서는 이♠♠ 매니저, 성♣♣ 차장 (당시에는 SKT의 멜론 시스템을 운영하던 리얼네트웍스 소속이었다), KTF는 김♥♥차장, 이◎◎ 과장, 아인스디지털은 유△△ 팀장, 엠넷은 노▲▲, 조▽▽이었다.

40) KTF 박♣♣ 상무 요청으로 만났다. 당시 회의 참석자는 로엔 신○○ 대표이사(SKT 대표로 참석하였다), 엠넷 박♥♥ 대표이사였다.

41) 이 회의에서부터 각 사별로 서비스담당자 및 권리담당자들이 모두 참석하도록 하였고, 그 이후 SKT의 음원을 관리하는 로엔이, KTF는 KTF뮤직이 각각 참석하기 시작하였다.

42) 아인스디지털에서 4개사 실무자들이 만났다.

43) 그 이전 및 이후 회의 참석자들을 참고하건대 당시 회의에는 KTF 김♥♥, KTF뮤직 이▼▼, 아인스디지털 유△△, 엠넷 노▲▲, 조▽▽, 로엔 성♣♣ 등이 참석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5. 22.자 회의에서 5. 28. 자 회의시 합의된 사항에 대한 대략적인 열개가 형성되었다.

44) Non-DRM은 앞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DRM조치를 하지 않아 제한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 디지털 저작권 관리)이란 디지털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 및 서비스를 말하는데 저작권자가 허락한 한도에서 저작물이 사용되도록 저작물에 기술적인 조치를 하여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포괄하여 의미한다고 보면 된다. 가장 보편적인 DRM이 복제제한 DRM이다. 따라서 DRM이 없는 저작물은 사용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로이 그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45) 당시 이 회의에는 SKT 이♠♠, 임▣▣, 로엔 성♣♣, 리얼네트웍스 오◎◎, KTF 김♥♥, KTF뮤직 이▼▼, 박♣♣, 엠넷 조▽▽, 노▲▲, 이♣♣, 아인스디지털 유△△이 참석하였다. 리얼네트웍스는 SKT의 온라인음악서비스인 멜론에 대한 시스템 관리 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46) 40곡은 30곡안과 50곡안을, 150곡은 120곡안과 200곡안을 절충한 결과였다.

- 38 ② 다운로드서비스와 스트리밍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복합상품⁴⁷⁾의 경우 Non-DRM 상품은 스트리밍서비스 가격 부분을 1,000원으로 책정하여 6,000원(5,000원 + 1,000원) 및 10,000원(9,000원 + 1,000원)으로 진행하고, 기존 상품인 MR⁴⁸⁾은 가격을 그대로 5,000원으로 유지하기로 한다.
- 39 ③ 곡수제한 즉 40곡 5,000원, 150곡 9,000원 상품에 대하여 DRM을 적용할 경우 Non-DRM 상품 가격에서 20%를 할인하여 가격을 정하기로 하고, 상품을 출시할 지 여부는 각 사의 자율에 맡기기로 한다.
- 40 ④ 단품 다운로드 상품⁴⁹⁾의 경우 Non-DRM 음원과 DRM 음원 사이에 가격 차이를 둔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그 차이는 100원 정도로 하기로 한다.⁵⁰⁾
- 41 ⑤ 논의한 가격대인 40곡 5,000원 상품과 150곡 9,000원 상품 이외에 중간 변칙 상품(예 : 70곡 7,000원)은 출시하지 않기로 한다.
- 42 ⑥ 신규상품 론칭 일정은 SKT는 내부 결정 있고 7주 후⁵¹⁾, KTF는 2008년 8월 이후⁵²⁾, 엠넷과 아인스디지탈은 대표자 회의에서 합의시에 결정⁵³⁾하기로 한다.

47) 복합상품은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를 같이 제공하는 통합서비스 상품을 말하는 것임은 앞에서 본 바 있다. 2008년 이전 징수규정에서 통합서비스는 MR이 유일했다.

48)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간임대제 또는 유무선연동기간제 통합서비스라고도 한다. MR(Monthly Rental)은 월 일정금액(예 : 5,000원)을 내면 결제한 기간 동안 인터넷 사이트에서 휴대폰으로 스트리밍 서비스와 다운로드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DRM조치를 해 놓은 서비스를 말한다. 인터넷과 휴대폰,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를 결합한 서비스라고 하여 “유무선 연동기간제 통합서비스“라고 하기도 한다. 스트리밍이든 다운로드든 금전을 지불한 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기간임대제“서비스라고 하기도 한다. 물론 다음달에도 결제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이미 다운로드 받은 음악파일도 재생하여 들을 수 있다.한편, MR서비스의 DRM은 특정 이동통신 이용자의 경우 해당 통신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곡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폐쇄적 DRM이다. 따라서 이 MR상품은 일반 DRM 상품보다 더 사용에 제약이 많다.

49) 곡당 다운로드를 말하는 것으로 1곡 다운로드 상품을 의미한다.

50) 기존 DRM 단품 다운로드가 500원이었으므로 Non-DRM 단품 다운로드를 600원으로 가격 책정을 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참고로, 아인스디지탈과 엠넷은 단품 다운로드 서비스의 경우 음원권리자가 Non-DRM 음원 제공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Non-DRM 음원을 판매하기도 하였다. 이는 Non-DRM 음원 판매가 본격적으로 허용되기 이전에 단품 다운로드 서비스에만 권리자의 의사 여부에 따라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이었다.

51) 7주 후란 4사 실무자 회의가 있는 2008. 5. 28. 로부터 7주 후를 말하므로 7월 셋째주 또는 넷째주 이후를 말한다. SKT는 실제 2008. 7. 29. Non-DRM상품 론칭 발표를 하였으나 상품 판매는 2008. 7. 30. 시작하였다.

43 또한, 신규 상품은 영구소유형 상품이라는 그 특성상 무료 이벤트 등 체험 프로모션을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여기서 무료체험이벤트 금지는 온라인상에서의 무료체험행사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44 ⑦ 신규 상품에 대하여는 자동연장 결제할인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기존 상품의 경우에는 자동연장 결제할인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다만, 타권리사와 협의가 필요하면 하기로 한다.

45 3개월/6개월/12개월 장기 이용권에 대하여는 각각 5%/10%/15%의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1개월 이용권에 대한 가격은 각 사 자율에 맡기기로 한다.⁵⁴⁾

46 2008. 5. 28. 실무자 회의에서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지고 난 후 각 회사 회의 참석자들은 각 사 대표자에게 보고를 하여 승인을 받았다.

47 참고로, 이 당시 합의에서 SKT(로엔), KTF(KTF뮤직), 엠넷, 아인스디지탈은 온라인음악서비스업 외에 음원유통업도 같이 영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원유통사업자의 입장에서 음원공급 조건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사실도 합의하였다.

48 ① 40곡 5,000원, 150곡 9000원 상품 이외의 변칙상품에는 음원 공급을 하지 않는다.

49 ② 신탁 3단체 징수규정과 달리 4개사간 인접권료는 40%를 적용하기로 하고, 타권리자와 서비스 계약시 요율부분에 대한 인상/인하 정책은 각 사 능력에 따르기로 한다. 다만 직배사가 각 사 기존 요율 외에 추가적으로 인상을 요구하면 4개사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한다.

52) 2008. 8. 1.경으로 신규상품 판매일정을 예상하고 있었다. KTF는 실제 2008. 8. 1.에 신규상품(Non-DRM)을 론칭하고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53) 엠넷과 아인스디지탈은 4사 실무자 회의 당시 6월 셋째주나 넷째주에 출시가능하다고 하였다. 실제 엠넷은 2008. 6. 16.에, 아인스디지탈은 2008. 6. 17.에 신규상품(Non-DRM)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54) 복합 상품 관련 장기 이용권 및 1개월 이용권에 대한 논의는 2008. 7. 21. 에 최종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 회의에서 1개월 이용권의 가격은 각사 자율에 맡기기로 함에 따라 아인스디지탈은 5,500원에 Non-DRM 1개월 이용권을 계속 판매할 수 있었다.(소갑 제52호증, 429쪽)

50 ③ 음원공급 계약시 Non-DRM 상품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 정산관련 시스템 구축 및 정산 관련 실사 조항을 계약서에 넣기로 한다. Non-DRM 상품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의미는 콘텐츠 또는 ID당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PC를 3대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DRM 서비스에 대한 이동기기 즉 단말기 수 제한은 현행대로 각 사 정책에 맡기기로 한다.

51 그러나 이는 로엔, KTF뮤직, 엠넷, 아인스디지탈을 포함한 13개 음원유통사업자의 음원공급조건 합의에 포섭되어 이 사건과 별도로 처리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2008년 12말경 합의(복합상품 가격인상 합의)

52 피심인 로엔, KTF, KTF뮤직, 엠넷, 아인스디지탈은 2008. 12. 5.부터 Non-DRM 복합상품(40곡+스트리밍, 150곡+스트리밍) 가격을 논의하였고, 2009. 1. 6.자로 1,000원씩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⁵⁵⁾.

다. 관련 증거

1) 2008. 5. 28. 합의 관련 증거

53 저작권 신탁 3단체의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시행이 임박하게 되자 2008. 4. 1. SKT, KTF, 아인스디지탈, 엠넷 4개사가 징수규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실무자 미팅을 가진 사실, 4. 8.에는 SKT, KTF, 엠넷의 대표자 회의가 열린 사실, 4. 11.에는 3개사 실무자 긴급회의가, 4. 16.에는 4개사 회의, 4. 23.에는 SKT, KTF, 엠넷 3개사

55) 소리바다도 2008. 12. 5.부터 피심인 회사들의 회의에 참석하고 2009. 1. 6.에 복합상품 가격을 1,000원씩 인상하였으나, 가격인상이 2008년 6월초에 로엔 등 4개사에 의하여 이미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로엔 등 4개사가 가담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더 나아가 로엔 등 4개사를 포함한 다수 음원유통업체들이 공동으로 소리바다로 하여금 로엔 등 4개사와 동일한 상품을 판매할 것으로 거래조건(소리바다와 체결된 음원공급계약)으로 요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가격인상을 강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리바다의 가격인상행위에 대하여는 무혐의하기로 한다.

실무자 회의, 5. 22. 아이스디지털에서 열린 4개사 실무자 회의 등을 한 사실, 이러한 회의를 통하여 피심인 회사들은 Non-DRM 음원을 허용할 것인지, 허용한다면 곡수 무제한까지도 허용할지, 곡수제한의 경우 기존 상품과의 관계에서 어떤 가격대에서 몇 곡으로 할지 등에 대하여 논의⁵⁶⁾를 지속적으로 한 사실 등은 다음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된다.

54 엠넷 조▽▽의 「음악사업팀 주간업무보고」 문서(소갑 제21호증, 348쪽), 2008. 4. 2.자 「음악서비스 사업체 실무자 협의 결과보고」 전자우편(소갑 제22호증, 349쪽) 및 2008. 4. 10.자 「4월 11일 긴급회의 개최안내」 전자우편(소갑 제23호증, 351쪽), 엠넷의 2008. 4. 14.자 「KTF- SKT- Mnet Media 실무자 회의결과 보고」 회의록 (소갑 제 25호증, 355쪽), KTF의 「음악사업팀 주간보고」 문서(소갑 제24호증, 353쪽), 엠넷 조▽▽의 2008. 4. 17.자 「RE : 3개사 실무자 회의」 전자우편(소갑 제 26호증, 358쪽) 및 「3개사 실무자 회의」 전자우편(소갑 제28호증, 359쪽), 2008. 4. 24.자 「3개사 실무자 회의결과 내용 공유(대외비)」 전자우편 (소갑 제29호증, 360쪽), KTF 김♡♡의 2008. 4. 17.자 「RE : 3개사 실무자 회의」 전자우편 (소갑 제27호증, 358쪽), 엠넷의 2008. 3. 3.자 「문화체육관광부 징수규정 개정 승인 관련 현황보고」 문서(소갑 제20호증, 343쪽), KTF IE사업본부 음악사업팀 2008. 4. 20.자 「음악사업 추진현황 및 대응방안」 (소갑 제30호증, 362쪽), KTF IE사업본부 음악사업팀 2008. 5. 15.자 「음악사업 추진현황 및 대응방안」 (소갑 제31호증, 378쪽), KTF 김♡♡의 2008. 5. 23.자 「4개사 실무자 회의결과 보고」 전자우편(소갑 제32호증, 400쪽), 엠넷 조▽▽에 대한 2009. 7. 21.자 진술조서(소갑 제1호증, 249쪽) 등

55 위 각 증거자료들의 중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엠넷 조▽▽의 2008. 4. 2.자 「음악서비스 사업체 실무자 협의 결과보고」 전자우편

음악사업팀 조▽▽입니다.
 어제 SKT, KTF, 아이스디지털, 그리고 당사 이상 4개사 실무자 미팅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신탁단체 전송사용료 징수규정안 개정’이후 첫 미팅이었습니다.

56) 실무자급 논의와 대표자급 논의를 같이 해 나갔다. 3개사 대표자 회의를 하는 경우 SKT 대표로 로엔 신○○ 대표이사, KTF 대표로 KTF상무이자 KTF뮤직 대표이사였던 박♀♀, 엠넷 박♡♡ 대표이사가 모였고, 4개사 대표자 회의를 하는 경우에는 아이스디지털 대표이사 한◇◇도 참석하였다.

각 사별 정보 공유 및 시장 대응 방안 등을 확인하기 위해 미팅이 이루어졌습니다.
(중략)

기타

- 블루코드가 KTF뮤직으로 사명변경하여 KT 내 음악사업부분 총괄할 예정
- 4개사 서비스의 가격이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가격이 매겨질 경우 담합으로 비취질 가능성 고민
- 소리바다가 신규 서비스 (5,000원 120곡)가 규정한 대로 런칭할 경우 음원 확보 유무가 서비스의 성공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직배사 등 다른 권리사들의 동향 파악 및 공유가 필요할 것

(중략)

- 4월 16일 2차 미팅 진행 예정

엠넷 조▽▽의 2008. 4. 10.자 「4월 11일 긴급회의 개최안내」 전자우편

지난 화요일(4/8) 긴급으로 SKT, KTF, Mnet Media 대표자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KTF 박☞☞ 상무님께서 요청하시어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상으로 말씀드렸지만, 긴급하게 만나신 만큼 실무자급의 빠른 Feedback을 지시하시네요.

우선 4/11일(금) 16: 00부터 실무자 긴급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략)

다음은 민감한 사항입니다.

1) 음악서비스관련 적절한 Pricing 산정

: 5,000원 120곡 서비스의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절 형태 구성

(중략)

4) 기타

: 투자유통에 대한 Standard 구축(경쟁적인 시장투자를 지양하고, 각 사 공조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그리고, 참석 및 회의개최에 대한 Confidential 유지

1) 참석자 : 각 사별로 서비스 담당자, 권리담당자가 모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하 생략)

엠넷의 2008. 4. 14.자 「KTF- SKT- Mnet Media 실무자 회의결과 보고」 회의록

2. Agenda

- ① Pricing - 곡 수 제한 월정액 서비스 가격형태
- ② P2P 서비스 정산 방식
- ③ 불법사이트 단속 공조 방안 협의
- ④ 앨범 투자 관련 업계 Standard 구성

3. 회의결과

1)P2P 서비스에 대한 음원 사용 허락 가능한 조건 구성(Option 구성)

(중략)

2) 월 곡수 제한 서비스 가격협의

○ 곡수 제한 월정액 서비스 가격형태에 대한 3사 합의

-> 월정액 5,000원(VAT별도) 30곡 이하 서비스

○ 직배사 동향

■ 직배 4개사(워너, EMI, SONY-BMG, Universal) 소리바다 5,000원 서비스 반대입장

■ SONY-BMG 의 경우, 일부 곡에 한하여 곡 제공 가능성 有

(중략)

4) 기타

- 아인스디지털 회의 참석 여부 결정
- 3개사 협의 내용에 대한 외부 공표 방법 논의 필요
 - 디발협 등 권리사 측과의 협의 방법 논의

엠넷 조▽▽의 2008. 4. 17.자 「RE : 3개사 실무자 회의」 전자우편

이미 대표님들 간에 협의가 된 내용이긴 하나, DRM 부분은 실무자들이 확정하거나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민감한 부분이기에 그렇습니다.

엠넷 조▽▽의 2008. 4. 17.자 「3개사 실무자 회의」 전자우편

어제 아인스에서 아인스디지털을 포함한 4개사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움직이고 있는 3개사 회의 (SKT, KTF, Mnet)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중략)
2) P2P사이트에 대한 음원공급 필수조건에 대한 3사 의견 합의
3) EINS DIGITAL 12,000원 Non-DRM 서비스에 대한 입장 정리
4) 4월 중 대표자 회의 추가 개최 여부 등

엠넷 조▽▽의 2008. 4. 24.자 「3개사 실무자 회의결과 내용 공유(대외비)」

어제 SKT-KTF-Mnet Media 3사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 결과 보고드리오니, 내용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 회의 개요

- 일 시 : 2008년 4월 23일(수) 16:00
- 장 소 : SKT 11층 D회의실
- 참석자 : SKT이♠♠ 매니저, 리얼 성♣♣ 차장, 로엔 허㉠㉠ 팀장, KTF김♡♡ 차장, KTF뮤직 김상엽 실장, MNET조▽▽, 노▲▲

2. 협의 내용

1)~4)중략

5) 징수규정 개정에 따른 각사별 주요 이슈

○ Non-DRM Issue

- Mnet과 로엔은 Non-DRM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입장
- 단 로엔은 월정액 무제한 DL 서비스에 대한 Max Cap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음원 공급 허락
- Cap의 범위는 150~200사이로 확정되지 않음
 - *Cap : 150~200곡
 - *가격 : 12,000원선
 - *ST복합상품의 가격은 1,000원이 적합하다는 의견이나 EINS 공조 안할 가능성 높음 (EINS는 현재 2,500원으로 가격 책정)
- 월정액 다운로드 서비스 가격에 대한 의견
 - *EINS : 무제한 12,000원
 - *엠넷 : 미정이나 가격 10,000원대로 낮췄으면 한다는 의견 제시
 - *로엔 등 : EINS가 가격을 낮추지 않을 것이며, 10,000원에 음원공급 허락이 쉽지 않겠다는 의견

(중략)

- 곡수제한 서비스에 대한 의견
 - 30곡 곡수제한 5,000원에 대한 의견 합의
 - 엠넷과 로엔 음원공급 가능
 - KTF 공식적인 Non-DRM 불가 이슈(내부 보고후 입장정리)

3. 기타사항

- 차주 EINS 포함한 4개사 회의가 있으나, 진행경과에 따라 3개사 회의도 차주 개최고려 (이하 생략)

KTF 김♡♡의 2008. 5. 23.자 「4개사 실무자 회의결과 보고」 전자우편

상무님, 김♡♡입니다.

어제 아인스디지털에서 있었던 4개사 실무자 회의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립니다.

1. 신규상품의 가격

: 신규 상품 가격 관련된 부분은 다음 대표자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무자 회의에서는 대표자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및 논의가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정리드리겠습니다.

: Non-DRM 정액제 (다운로드 전용 상품 기준)

- 5,000원 : SK/로엔, 아인스 및 당사는 30곡, 엠넷은 여전히 40곡 내지 50곡 정도 요망 (대표자 회의에서 나머지 2사와 함께 압박하시면 엠넷도 30곡으로 따라 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9,000원 : 150곡

: 복합 상품 구성시 스트리밍 가격

- 1,000원 (또는 1,050원) : SK/로엔, 엠넷 및 당사, 징수규정 준용
- 2,500원 : 아인스. (중략)
- 대표자 회의에서 나머지 2사와 함께 압박하면 아인스도 1,000원으로 따라 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중략)

: DRM정액제 (다운로드 전용 상품 기준)

- 징수규정을 준용하여 Non-DRM 대비 20% 할인(실무자 간에 큰 이견 없었음)
- 즉, Non-DRM 5,000원 > DRM 4,000원, Non-DRM 9,000원 > DRM 7,200원
- DRM 무제한 : 현 가격 유지(10,000원). 실질적으로 가격인하 유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정리

- 전반적인 방향이 징수규정과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징수규정을 준용하는 쪽입니다. 징수규정을 준용하되, '120곡 이하'라고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는 '30곡 내지 50곡 이하'로 의견을 모은 것이고, '무제한'이라고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는 '150곡'이란 제약을 두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스트리밍 복합 1,000원 내지 1,050원 만 합의 되면 개정 징수규정의 내용을 거의 따라가게 됩니다.
- 시간관계상 다음 대표자 회의에서 상품 가격 관련된 부분은 완벽하게 합의가 도출되었으면 하는 것이 실무자들 바램입니다.

참고) 상품 추진 현황

- 엠넷 : 시스템적인 개발은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이나 Non-DRM 상품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까지 4사 합의가 이루어지고 난 후 권리 확보 작업을 벌여야 하므로 권리확보를 최대한 당겨서 2주만에 끝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6월 중순은 되어야 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SKT : 마찬가지로 이슈가 존재하고, 개발이 엠넷보다는 늦은 것으로 보이므로, 6월 중순 내지 말경에 런칭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이하 생략)

엠넷 조▽▽에 대한 2009. 7. 21.자 진술조서

문 : 새로운 징수규정이 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자들의 동향은 어떠하였는가요.
 답 : 신탁 3단체 징수규정에서는 120곡 이하와 무제한으로 상품군이 나뉘게 되고, 복제 금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는 경우 각 요율에서 할인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120곡 이하 상품군과 무제한 상품군 등 많은 종류의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나, 사업자들은 곡수 무제한은 수용할 수 없고, 곡수 제한에서 몇 곡을 얼마로 할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문 : 사업자들이 곡수 무제한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음원권리자로서의 입장이 반영된 것인가요.
 답 : 네. 그렇습니다. 음원권리자인 사업자의 경우 1곡당 단품으로 팔 경우 500원, 600원 하는 것을 무제한으로 공급하여 정액으로 판매하는 것은 엄청난 손해라는 인식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곡수 무제한 상품은 수용불가라는 입장이었고, 이 사건 사업자들 모두 권리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무제한 상품을 배제하는 것에 대하여 이견이 없었습니다.

56 피심인 SKT, 로엔, KTF, KTF뮤직, 엠넷, 아인스디지탈은 2008. 5. 28. 이화여자 대학교 SK텔레콤관에서 Non-DRM 상품 출시 가격 및 곡수, 복합상품 가격 및 곡수, Non-DRM 상품에 DRM 조치를 한 경우의 가격(20% 할인), 기존 상품인 MR가 격 유지, 자동연장 결제 할인 관련 신규 상품 및 기존 MR 상품 적용여부, 무료체험 허용여부 등에 대한 합의를 한 사실, 2008. 5. 28. 실무자 회의에서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지고 난 후 각 회사 회의 참석자들은 각 사 대표자에게 보고를 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은 다음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된다.

57 로엔 성♣♣의 2008. 5. 27.자 「내일 5월28일(수) 징수규정 대응 워샵 공지」 전자우편(소갑 제33호증, 403쪽) 및 워샵공지메일 첨부 문서인 「4개사 징수규정 대응 워샵」(소갑 제34호증, 404쪽), 엠넷 이♣♣의 2008. 5. 29.자 「RE:내일 5월 28일(수)징수규정 대응 워샵 공지」 전자우편(소갑 제35호증, 406쪽) 및 2008. 5. 28.자 「4개사 징수규정안 관련 실무자 회의」 회의록(소갑 제36호증, 407쪽), 전 엠넷 차장 노▲▲의 2008. 5. 28.자 「RE: Free DRM 상품 서비스 관련」 전자우편(소갑 제37호증, 409쪽), KTF 김♡♡의 2008. 5. 29.자 「28일 워크샵 미합의 안건 관련 의견」 전자우편(소갑 제39호증, 413쪽) 및 2008. 5. 30.자 「28일 4사 실무자 회의 결과 보고」 57)전자우편(소갑 제38호증, 411쪽), 아인스디지탈 유△△의 2008. 6. 2.자 「RE : 28일 워크샵 미합의 안건 관련 의견」 전자우편(소갑 제42호증, 416쪽), 전 엠넷 차장 노▲▲의

57) 김♡♡이 보낸 전자우편의 수신인인 KTF IE사업본부의 박♣♣ 상무는 당시 KTF뮤직 사장을 겸임하였다. 이후 KT에서 퇴사하고 KTF뮤직 사장으로만 재직하고 있다.

2008. 6. 2.(오후 5:12)자 「RE: [중요].RE: 4개사 실무자 회의 요청」 전자우편(소갑 제 40호증, 416쪽) 및 2008. 6. 2.(오후 4:50)자 「[중요]. RE : 4개사 실무자 회의 요청」 전자우편(소갑 제41호증, 416쪽), 엠넷 이♣♣ 과장의 2008. 6. 18.자 「4개사 9000원 징수규정안 관련 회의록」 전자우편(소갑 제43호증, 419쪽) 및 2008. 6. 18.자 「신탁단체 징수규정안 관련 4개사 회의」 (소갑 제44호증, 420쪽), 아인스디지털의 2008. 6. 19.자 「2008년 6월 이사회 Agenda」 문서(소갑 제45호증, 422쪽), 아인스디지털 유△△의 2008. 6. 23.자 「RE: 복합 상품 관련 미팅요청 드립니다.」 전자우편(소갑 제 46호증, 424쪽), SKT 이♣♣의 2008. 6. 23.자 「회신 : 복합상품 관련 미팅요청드립니다.」 전자우편(소갑 제47호증, 424쪽), 전 엠넷 차장 노▲▲의 2008. 6. 23.자 「복합 상품 관련 미팅 요청드립니다.」 전자우편(소갑 제48호증, 424쪽), KTF 김♡♡의 2008. 7. 2.자 「RE: 4개사 미팅 공지」 전자우편(소갑 제49호증, 425쪽), 로엔 성♣♣의 2008. 7. 2.자 「4개사 미팅 공지 전자우편」 (소갑 제50호증, 425쪽), 전 엠넷 차장 노▲▲의 2008. 7. 21.자 「Non-DRM 복합상품 관련 의견」 (소갑 제52호증, 429쪽), 엠넷의 2009. 3. 22.자 「경실련 음악사업자 공정위 신고건」 (소갑 제86호증, 481쪽), 아인스디지털 유△△의 「인사고과표(2008년 하반기)」 문서(소갑 제59호증, 435쪽), 엠넷 조▽▽에 대한 2009. 7. 21.자 진술조서(소갑 제1호증, 249쪽), 노▲▲에 대한 2009. 7. 22.자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254쪽) 및 2009. 8. 18.자 진술조서(소갑 제3호증, 262쪽), KTF 김♡♡에 대한 2009. 8. 14.자 진술조서(소갑 제8호증, 287쪽), 아인스디지털 유△△에 대한 2009. 8. 18.자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 266쪽), KTF뮤직 이▼▼에 대한 2009. 8. 19.자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272쪽), SKT 이♣♣에 대한 2009. 8. 31.자 진술조서(소갑 제9호증, 292쪽) 및 2010. 3. 25.자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296쪽), 엠넷 이◆◆, 이♣♣에 대한 2009. 11. 10.자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 278쪽) 및 2010. 3. 3.자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 283쪽), 음저협 배□□에 대한 2009. 9. 29.자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306쪽) 및 2009. 12. 3.자 진술조서(소갑 제13호증, 312쪽) 등

58 위 각 증거 자료들의 중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로엔 성♣♣의 2008. 5. 27자 「내일 5월 28일(수) 징수규정 대응 워킹 공지」 전자우편

안녕하세요.
로엔 성♣♣입니다.

내일 5월 28일(수) 위 제목 관련하여 워킹을 진행합니다.
 첨부자료 참고하시고 내일 오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28. 워킹공지메일 첨부자료 「4개사 정수규정 대응 워킹」

1. 회의개요

- 일 시 : 2008년 05월 28일(수) 오전 10:00 ~ 오후 17:00
- 장 소 : 이화여자대학교 아카데미
- 참석자 : SKT 이♠♠M, 로엔 성♣♣M, 리얼네트웍스 오○○
 KTF 김♡♡차장, KTF뮤직 이▼▼팀장, 박♣♣실장(코리아리듬 윤ΩΩ팀장)
 M.net미디어 조▽▽ 팀장, 노▲▲ 차장, 이♣♣ 과장
 아인스디지털 유△△ 팀장

2. Agenda

- 정수규정 관련 향후 대응방안 협의 워킹
 - ① 곡수 제안 Non-DRM 상품에 대한 대표자 회의 결과 공유
 - ② 향후 대응방안 협의

3. 기존 회의결과

1) 곡수제한 상품에 대한 기존 4개사 대표자 회의 결과

구분	SKT	KTF	M.net	아인스디지털
5000원 30곡	○	○		○
5000원 50곡			○	
9000원 150곡	○	○	○	○
복합상품 1,050원	△	△	○	
복합상품 2,500원				○

- 최종결정은 4개사 대표자 회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임
- 현재 시점에서 이슈는 5000원 적용 곡수와 복합상품의 적정가 산정임

4. 워킹 진행 일정

일시		내용	
오전	10: 00~11: 00	정수규정 관련 4개사 합의내용 및 현 Status 공유	
	11:00 ~12: 00	복합상품 관련 가격 협의	
오후	12:00 ~13: 30	점심식사	
	13:30~ 15: 00	신규진입 업체의 변칙상품 론치 ⁵⁸⁾ 대응협의	
		신규상품 론치에 따른 요율 적용 협의	
	15:00 ~ 16: 00	신규 상품 론치 일정 및 프로모션 관련 협의	
	16:00 ~ 17: 00	기타 이슈 및 향후 일정 협의	
17: 00~	저녁식사		

- 추가 이슈에 대해서는 오후 마지막 Section에서 개진요망

엠넷 이♣♣의 2008. 5. 29.자 「RE : 내일 5월 28일(수) 정수규정 대응 워킹 공지」 전자우편

안녕하세요.

엠넷미디어 이♣♣입니다.

5월 28일 진행하였던 실무자 워킹 관련 회의록 드리오니,

58) 론칭의 오타인 것으로 보인다. 그 아래도 마찬가지다.

각사별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8. 5. 28.자 「4개사 징수규정안 관련 실무자 회의」 회의록

일시 : 2008-05-28 오전 10:00~오후 18 : 00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SK텔레콤관

참석 :SKT 이♠♠M, 임□□M, 로엔 성♣♣M, 리얼네트웍스 오●●부장
KTF 김♡♡ 차장, KTF뮤직 이▼▼팀장, 박♣♣ 실장
M.net미디어 조▽▽ 팀장, 노▲▲차장, 이♣♣ 과장
아인스디지털 유△△ 팀장

1. 곡수제한 Non-DRM 상품 가격 및 곡수

- 1) 5,000원 상품에 대해서 40곡에서 4개사 합의
→ 소비자 미사용 곡수 이월불가(미사용분까지 권리사 인접권료 지급)
- 2) 9,000원 상품에 대한 부분은 향후 대표회의를 통해 재결정
- 3) 권리사 승인 기간 1개월 이내 진행 합의

2. 복합 상품 관련 가격 협의

- 1) 권리사 사용 승인 여부가 중요, 우선적으로 1,050원에 음원사용 승인 진행
→ 미승인시 2,500원으로 진행
- 2) 기존 서비스 가격 정책 유지, 신규 서비스에 진행
- 3)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4개사 동의

3. 신규 진입 업체의 변칙상품 대응 협의

- 1) 논의한 가격대 외 상품에 대해서는 합당한 논리 없이 음원제공 불가
→ 합당한 논리 : 곡당 125원
- 2) 4개사 변칙 상품 대응 담합에 따른 법적 Risk 근거 확인 → 각사 법무팀
- 3) (생략)

4. (생략)

5. 신규상품 론칭 일정 및 프로모션 관련 협의

- 1) 각사별 신상품 론칭 일정

구분	오픈 일정
SKT	내부 결정 후 7주후
KTF	2008. 08. 이후
M.net	대표자 회의 때 합의시 결정
아인스디지털	

- 2) 신상품 프로모션
→ 소유형 다운로드 체험 프로모션 불가(DRM/Non-DRM) 합의

6. 기타 이슈 및 향후 일정 협의

- 1) 자동결제 할인을 적용 부분
→ 신상품에 대하여 자동결제 할인을 미적용 합의
→ 기존상품에 대한 부분은 지속하나, 권리사 협의 필요 동의
- 2) 곡수제한 Non-DRM 상품에서 동일곡에 대해 재다운로드
→ 재다운로드는 합의한 기간은 각 사별로 의견 취합 재논의
- 3) 신상품내 Non-DRM 미승인음원 포함 서비스 진행여부
→ 기존과 동일한 정산로직시 승인업체 정산금액이 낮아질 수 있음 인지
→ 각사별 계약 정책으로 해결함

- 4) DRM 할인율(20%) 적용된 5000원/9000원 서비스 진행여부
→ 각사 개별 결정함
- 5) 향후 실무자 회의 일정
→ 4개사 대표자 회의 일정 확인 필요
→ 대표자 회의 다음날 실무자 회의 개최

엠넷 노▲▲의 2008. 5. 28.자 「RE: Free DRM 상품 서비스 관련」 전자우편

금일 4개사(SKT, KTF, 아인스, 엠넷)실무자 협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금일 논의된 사안을 아래와 같이 전달드립니다.

(중략)

<변경된 상품 내용>

- 삼삼한 다운로드 -> 40곡 다운로드 \5,000
-> 가장 가능성 높습니다.(당사 50곡 주장, 타3사 30곡 주장하여 40곡 선에서 실무자는 협의함)
- 무제한 다운로드 -> 120곡 다운로드 \9,000
-> 150곡 다운로드 \9,000원 가능성이 높음(당사 200곡, 타3사 150곡 주장)
- 삼삼한 1개월 -> 40곡 다운로드 1개월 \5,000
-> 적용불가입니다.(월정액 상품으로 자동결제 구매자에게만 가능)
- 120곡 다운로드 1개월 \9,000
-> 역시 적용불가입니다.

* Free 상품은 1,000원 추가하면 음악감상 가능

(중략)

* 위의 5,000원과 9,000원 상품에 대해 DRM을 입힐 시 20%할인하는 부분도 협의되었습니다.

* 한편 5,000원과 9,000원 외의 중간상품 예를 들면 7,000원 100곡과 같은 상품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 멀티이용권(기간제다운로드) 상품은 아마도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5,000원이 자동결제 할인되어 4,500원이 된 것인데 저작권협회 등에서 이에 대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이슈가 있지만 현행 유지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에 반해 5,000원 / 9,000원 상품은 할인하지 않는 것으로 논의가 되었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사안입니다.

(중략)

위의 건은 실무자들이 협의한 내용이므로 변경될 소지가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4개사 대표님들이 협의하시면 결정내용에 대해 바로 회신드릴터이니 일단 기획 및 개발은 위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KTF 김♡♡의 2008. 5. 30.자 「28일 4사 실무자 회의 결과 보고」 전자우편

상무님, 28일에 있었던 4사 실무자 회의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립니다.

참석자 : 각사별 음원소싱, 음원유통, 서비스담당자(사별 3명 정도)

1. 곡수 제한

(중략)

: 5,000원에 대한 4사 실무자 협의

(중략)

- 3사의 입장이 40곡으로 가는 상황에서 음원 M/S 가 가장 낮은 당사만 30곡을 주장하면서 협의를 지연시키기는 어려운 분위기여서 일단 실무자 협의는 40곡으로 의견

이 모아진 것처럼 진행되었음

- 기간제한 상품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여전히 30곡으로 가는 것이 유리함

(4사 소비자 조사 결과 월평균 다운로드 건수 : 27곡

매월 Hot 100에 신규 진입되는 곡수 : 30곡 내외) (중략)

2. 복합 상품에서의 스트리밍 가격

: 아인스가 입장을 양보하여 우선적으로 1,050원으로 타권리자와 음원 사용 승인 협의 진행 대표자 합의 시점으로부터 1개월 내에 타 권리자 승인 못 받으면 2,500원으로 올리기로 함

: 단, 어떤 경우에도 기존 상품의 가격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함

(즉, 2,500원이 되더라도 자유감상과티는 4,000원 + 2,500원이 아니라 4,000원+1,050원)

3. DRM 적용된 곡수 제한 상품

: Non-DRM 가격에서 20% 할인하여 적용(중략)

4. 단품 서비스

: 현행 - 아인스와 엠넷은 DRM적용음원과 Non-DRM 음원에 대하여 가격차이를 두지 않고 판매 중

: 변경 - DRM 적용 음원과 Non-DRM 음원에 가격차이를 두어서 판매한다는 원칙에 합의

5.(생략)

6. 변칙 상품 허용여부

: 70곡 7,000원과 같은 중간 변칙 상품은 출시하지도 않고, 음원공급도 하지 않음

: 음원공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담합 이슈가 존재하지 않는지 법적인 이슈 체크하기로 함

7.(생략)

8. 신규상품 런칭 일정 관련

: 런칭일정

6월초에 대표자 회의를 통해 곡수조건 등이 합의될 경우

엠넷/아인스-개발은 완료, 권리확보에 2~3주 소요, 즉 6월 3주 내지 4주에 출시 가능

SKT - 약 7주 소요. 즉, 7월 3주 내지 4주 정도에 출시 가능

당사 - 8월 1일 예정(Muz는 Non-DRM 상품을 7월초에 출시 가능)

: 신규상품에 대한 첫 30일 무료 이벤트

진행하지 않기로 함(영구 소유형 상품이란 특성상 무료이벤트는 불가)

9. 자동연장 결제 할인

: 신규 상품에는 적용 안함. 기존 기간제 상품에는 그대로 두되 타 권리사 협의 필요

10. Non-DRM 상품의 재다운로드 기간 축소

: SKT입□□ 매니저 반대로 기간 축소 합의에 실패. 각사별 의견 취합 후 재논의하기로 함 (중략)

이상입니다. 엠넷에서 정리한 회의록을 별첨합니다.

아인스디지털 유△△의 2008. 6. 2.자 「RE : 28일 워크샵 미합의 안건 관련 의견」 전자우편

KTF김♡♡ 차장님이 제기한 이슈에 대한 아인스 의견을 말씀 드리면 ~

1. Non-DRM 상품 가입자에게 Non-DRM 불허 음원에 대해 DRM 적용된 음원을 다운로드 선택권을 줄 것인가 ?

-> 각 사이트의 정책에 따라서 적용했으면 합니다.

(중략)

2. Non-DRM 허용한 LP와 그렇지 않은 LP간의 형평성 문제

-> 형평성 문제는 동일하지만 요율은 동일하게 적용했으면 합니다.

(중략)

3. Non-DRM 상품의 재다운로드 기간을 DRM 상품보다 축소할 것인가?

-> 이것도 각 사의 정책에 따라서 적용했으면 합니다.

(중략)

참고> 너무 detail한 부분까지 4개사가 합의해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론칭하면 비용절감 차원에서 통합하는 것이 옳을 듯한데 ~ ㅎㅎㅎ

전 엠넷 차장 노▲▲의 2008. 6. 2.자 「[중요]. RE : 4개사 실무자 회의 요청」 전자우편

일단 대표님께 지난 주말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상황에서...

몇 곡 차이로 계속 지리한 협상을 하는 것보다 빠르게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계속 압박을 하였더니, 그럼 실무자가 협의한 안대로 진행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40곡 5000원 / 150곡 9000원에 대해 당사 대표님의 최종 컨펌을 받은 상황입니다.

해외 출장건 등으로 대표님께서 각 사 대표님들과 미팅을 가지시기에는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실무자 안대로 빨리 협의끝내고 진행하라고 하시는군요.

관련해서 지난번 실무자안으로 대표님들께 보고하시고 문제가 없었다면 빨리 종미팅 하시죠. ㅋㅋ

(중략)

내일 오후 2시경에 시간 어떠십니까?

장소는 엠넷이 아직 회의실 셋팅이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장소 제공 가능하신 곳 섭외드립니다..^^;

아래 혼란스런 부분들도 내일⁵⁹⁾함께 종 내시죠~

전 엠넷 차장 노▲▲의 2008. 7. 21.자 「Non-DRM 복합상품 관련의 건」 전자우편

포털기획팀 노▲▲입니다.

7월 18일 Non-DRM 복합상품 관련 4개사 실무자회의 내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엠넷은 금일 공문을 각사에 보내고 커뮤니케이션하여 수요일(23일) 중 오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멜론은 29일경 오픈 예정이라고 하나 통합상품이 아닌 다운로드 상품만 오픈할 것으로 보이고, 벅스는 금주말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도시락은 8월 1일 오픈예정입니다.

복합상품 할인이 공식화 됨에 따라 소리바다도 8월 1일 오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복합상품의 할인

- 2008년 12월 31일분의 판매까지는 스트리밍을 1,000원으로 판매하지만 2,000원으로 정산함

2. 장기결제 및 자동결제 상품의 할인

- 자동결제 상품에 대한 10% 할인율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함
- 3개월/6개월/12개월 장기이용권에 대해서는 각각 5%/10%/15% 의 할인율을 적용토록 함
- 1개월 이용권에 대한 가격은 각사 자율에 맡기도록 함

(벅스의 경우 현재 1개월 이용권을 5,500원에 판매하고 있으나 자동결제 가입자와의 비중이 약 5:5 수준이라고 함. 따라서 자동결제 가입유도를 위해서 1개월 이용권은 5,500원에

59) 2008. 6. 3.을 말한다.

판매하는 것이 가입자 확대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3. 무료체험의 금지

- 사이트 및 외부 프로모션 시에도 무료체험 프로모션을 금지토록 함
- 외부 프로모션 1개월, 3개월 이용권 등 자동결제 프로모션이 아닌 개월 단위의 상품만 가능
- 당사의 경우 현재 삼성전자 PDA건과 관련 이미 계약되어 있으므로 본 건까지만 진행하는 것으로 함

(MP3P 유통사와 진행하려던 무료체험 프로모션은 수정되어야 함)

(이하 생략)

엠넷의 2009. 3. 22.자 「경실련 음악사업자 공정위 신고건」 문서

4. 법률위반 확인사항

① 동일 상품 출시(2008. 08)

08년 4월부터 Non-DRM 가격 협의를 위한 SKT/KTF/엠넷/아인스디지털 4개사의 지속적인 회의 및 협의 후 8월 신규 복합상품 출시 합의

08. 04. 11	[회의] P2P 서비스를 위한 음원 가격 및 서비스 방식 협의 (월정액 5000원 30곡 이하 서비스)
08. 04. 16	[회의] Non-DRM 가격협의 관련 아인스디지털/엠넷/SKT/KTF 회의(12000원)
08. 04. 23	[회의] Non-DRM 가격협의 관련 아인스디지털/엠넷/SKT/KTF 회의
08. 05. 23	[회의] 아인스 엠넷 SKT KT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수제한 Non-DRM 가격협의 (5000원 40곡) ▪ 복합상품 가격협의(1050원) ▪ 신규진입업체 변칙상품 공동대응 ▪ 신규상품 요율협의 (40%) 및 런칭시기 협의
08. 05. 28	[워크샵] 가격협의(40곡 5000원/ 150곡 9000원)
08. 06. 03	[회의] 가격협의사항 확정
08. 06. 18	[회의] 징수규정안에 따르지 않고 징수요율 인상할 수 있는 방안 공동협의(150곡 9000원)
08. 06. 24	[회의] 복합상품 관련회의
08. 07. 04	[회의] 아인스디지털/엠넷/SKT/KTF P2P 웹하드 음원공급가이드라인 확정
08. 07. 08	[회의] Non-DRM 관련 합의 및 복합상품 가격결정
08. 07. 16	[공문] 월정액 곡수제한 다운로드 상품의 스트리밍 결합상품 오픈에 대한 승인요청 공문발송(40곡 7000원/150곡 11000원)

엠넷 조▽▽에 대한 2009. 7. 21.자 진술조서

진술인에게 「4개사 징수규정안 관련 실무자 회의」 문서를 보여 주고 난 후

문 : 2008. 5. 28. AM 10:00~PM 17:30 까지 이화여자대학교 SK텔레콤관 강의실에서 4개사 징수규정안 관련 실무자 회의를 한 적이 있는가요.

답 : 네. 있습니다. 당시 SK텔레콤 이♠♠, KTF 김♡♡, KTF뮤직 이▼▼, 아인스 유△△, 리얼성♣♣(현재 로엔엔터테인먼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 엠넷에서 저, 노▲▲, 이♣♣이 참석하였습니다.

문 : 당시 어떤 내용에 대하여 각사가 의견을 모았는지 말해보겠는가요.

답 : 네. 곡수제한 Non-DRM 상품 가격 및 곡수의 경우 5,000원 상품은 40곡으로 4개사가 합의하고 소비자 미사용 곡수는 이월 불가하며, 9,000원 상품에 대하여는 향후 대표회의를

통하여 재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복합상품 즉 스트리밍서비스와 다운로드 서비스가 같이 이루어지는 상품의 경우 우선 1,050원에 음원사용 승인을 진행하고, 기존 서비스는 가격정책을 유지하며, 신규 서비스에 진행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복합상품의 경우 가격을 인상하는 것으로 4개사가 모두 동의를 하였습니다.

(중략) 소유형 다운로드 체험 프로모션은 하지 않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 이외 합의된 사항들은 문서에 기재된 대로입니다.

아인스디지털 유△△에 대한 2009. 8. 18.자 진술조서

진술인에게 「4개사 징수규정안 관련 실무자 회의」 문서를 보여 주고 난 후

문 : 2008. 5. 28. 이화여자대학교 SK텔레콤관에서 4개사 실무자 회의를 한 적이 있는가요.

답 : 네. 그렇습니다. 4개사 실무자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석자는 SK텔레콤 이♣♣, 로엔 성♣♣, KTF김♡♡, KTF뮤직 이▼▼, 박♣♣, 엠넷 조▽▽, 노▲▲, 이♣♣ 박스(당시 상호명은 아인스디지털입니다)에서는 제가 참석했습니다.

문 : 위 문서 내용에 의하면 “2. 복합상품 가격협약” 항목에 “2) 기존서비스 가격정책 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서비스”는 어떤 것을 말하는가요.

답 : 기존서비스는 MR상품을 말합니다.(이하 생략)

2) 2008년 12월 말경 합의 관련 증거

59 피심인 로엔, KTF, KTF뮤직, 엠넷, 아인스디지털은 2008. 12. 5.부터 지속적으로 Non-DRM 복합상품 관련 온라인음악 서비스사업자 5개사 미팅을 하였고, 2009. 1. 6.자로 복합상품 가격을 1,000원씩 인상한 사실은 다음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60 로엔 여ππ의 2008. 12. 4.자 「서비스사업자 5개사 미팅의 건」 전자우편(소갑 제66호증, 444쪽) 및 2008. 12. 10.자 「서비스사업자 5개사 미팅의 건」 전자우편(12/11일자)(소갑 제68호증, 448쪽), 엠넷 이♣♣의 2008. 12. 5.자 「FW: 서비스사업자 5개사 미팅의 건」 전자우편(소갑 제67호증, 445쪽), 아인스디지털 포탈사업팀 2008년 12월 3째주 업무내용 보고 문서(소갑 제69호증, 449쪽), 아인스디지털 유△△의 2008. 12. 23.자 「RE : 40/150곡 결합 상품 가격인상 건」 전자우편(소갑 제70호증, 450쪽), 아인스디지털 포탈사업팀 김ΘΘ 작성의 2008. 12. 23.자 「40곡/150곡 결합상품 판매가격 변경 건」 기안문서(소갑 제71호증, 451쪽), 소리바다 조ΦΦ의 2008. 12. 29.자 「서비스 상품가격인상 및 상품추가관련 스케줄 공유」 전자우편(소갑 제72호증, 452쪽), 아인스디지털 명세식의 2008. 12. 29.자 「RE: 40/150곡 결합상품 인상 건」 전자우편(소갑 제73호증, 453쪽) 및 2008. 12. 26.자 「40/150곡 결합상품 인상 건」 전자우편

(소갑 제74호증, 454쪽), 소리바다 저작권보호센터의 「주간업무보고(1/5~1/9)」 문서(소갑 제75호증, 456쪽) 및 「주간업무보고(1/12~1/16)」 문서(소갑 제76호증, 457쪽), 소리바다 유㉠㉠의 2009. 1. 5.자 「FW: 서비스상품가격인상 및 상품추가관련 스케줄 공유」 전자우편(소갑 제77호증, 459쪽), 소리바다 조ΦΦ의 2009. 1. 5.자 「FW: 서비스상품가격인상 및 상품추가관련 스케줄 공유」 전자우편(소갑 제78호증, 459쪽), 로엔 여ππ의 2008. 1. 6.자 「서비스사업자 5개사 미팅의 건(1/9일자)」 전자우편(소갑 제79호증, 461쪽), 소리바다 유㉠㉠의 2009. 1. 12.자 「금일 임원회의 반영내용」 전자우편(소갑 제80호증, 462쪽), 엠넷의 2009. 3. 22.자 「경실련 음악사업자 공정위 신고 건」(소갑 제86호증, 481쪽), 엠넷 노▲▲에 대한 2009. 7. 22.자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254쪽), 소리바다 유㉠㉠의 2009. 9. 15.자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300쪽) 등

61 위 각 증거자료들의 중 중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로엔 여ππ의 2008. 12. 4.자 「서비스사업자 5개사 미팅의 건」 전자우편

서비스 사업자 5개사 미팅 일정 알려 드립니다.
아래와 같사오니 일정 체크하신 후 참석 가능여부 회신 요청 드립니다.

1. 일정 : 2008년 12월 5일 오후 4시
2. 장소 : 로엔엔터테인먼트 1층 회의실
3. Agenda : 2009년 1월1일 시행 Non-DRM 복합상품 가격 협의
4. 참석자 : KTF 김♡♡, KTF뮤직 이▼▼, 아인스 유△△, 엠넷 조▽▽, 이♣♣ 소리바다 유㉠㉠, 이㉡㉡, 로엔 성♣♣

엠넷 이♣♣의 2008. 12. 5. 자 「FW: 서비스사업자 5개사 미팅의 건」 전자우편

금일 아래와 같이 5개사 미팅이 잡혀 있습니다.
금일 미팅 내용은 아래와 같이 **Non-DRM 복합 상품에 대한 가격 협의**입니다.(2009/1/1일 적용되는 신탁단체 가격관련&요일)
당사 운영중인 서비스쪽 관련 사안이라서, 내부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참석하여 대응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로엔 여ππ의 2008. 12. 10. 자 「서비스사업자 5개사 미팅의 건(12/11일자)」 전자우편

서비스 사업자 5개사 미팅 일정 알려 드립니다.
아래와 같사오니 일정 체크하신 후 참석 요청 드립니다.

1. 일정 : 2008년 12월 11일 오후 5시
2. 장소 : 아인스디지털 대회의실

3. Agenda : 2009년1월1일 시행 Non-DRM 복합상품 가격 협의

4. 참석자 : KTF 김♡♡, KTF뮤직 이▼▼, 아인스 유△△, 엠넷 조▽▽, 이♣♣, 이◆◆, 소리바다 유㉠㉠, 이㉡㉡, 로엔 성♣♣, 여ππ

아인스디지털 유△△의 2008. 12. 23.자 「RE : 40/150곡 결합 상품 가격인상 건」 전자우편

유△△입니다.

40/150곡 결합 상품의 스트리밍 가격 인상을 '09년 1월 1일 ~ '09년 1월 5일까지 휴일 관계로 '09년 1월 6일 적용하기로 3개사(멜론, 엠넷, 도시락)와 협의를 끝냈으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인스디지털 김㉠㉠ 작성의 2008. 12. 23. 자 「40곡/150곡 결합상품 판매가격 변경 건」 기안문서

40곡/150곡 결합상품 스트리밍 가격 인상에 따른 상품판매가 변경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재가를 요청드립니다.

1. 대상상품 : 40/150 스트리밍 결합상품(자동결제 포함 4종)
2. 내용
 - A. 결합상품 가격 중 스트리밍 가격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 (중략)
3. 변경일시 : 2009년 1월 6일 자정부터(멜론, 엠넷, 도시락 등 3사 협의 완료)
4. 백스 사이트 공지 : 2008년 12월 29일. 끝.

소리바다 저작권보호센터의 「주간업무보고」 문서

o 09. 1. 6. 가격인상 관련

- Major 5개사업자 공지 내용/절차 조사
- 가격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
- 언론 릴리즈 관련 준비 (협조 : 경영기획팀)

소리바다 조ΦΦ의 2008. 12. 29.자 「서비스상품가격인상 및 상품추가관련 스케줄 공유」 전자우편

현재 기존 복합상품에 대한 가격인상 이슈가 다시 일어나면서, 이번 상품추가와 동시에 상품 가격인상 작업을 동시에 시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확정은 1월 5일 예정)
공식적으로는 가격인상이 확정될 경우 1월 6일부터 관련 공지와 예약 판매 및 상품추가 안내 까지 사이트 내에서 실행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미리 공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월요일(1월 5일)에 결정되며, 다른 변동이 있을 시 다시 메일 드리겠습니다.(이하 생략)

소리바다 유㉠㉠의 2009. 1. 5.자 「FW: 서비스상품가격인상 및 상품추가관련스케줄 공유」 전자우편

유㉠㉠입니다.

금일 정오경 기획운영팀에서 가격인상 건에 관한 당사 정책이 결정되었다는 내용의 메일을 수신하였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현 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상황은 가격인상 절차를 밟는 중, 당사보다

먼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5개 서비스 사업자(멜론, 뮤직온, 도시락, 벅스, 엠넷) 전부 또는 일부가 공정위 등 규제기관으로부터 강한 제재를 받아 인상절차를 홀딩되거나 드롭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엠넷 노▲▲에 대한 2009. 7. 22.자 진술조서

문 : 소리바다도 합의에 같이 참여하게 된 때는 언제인가요.
답 : 2008년 말 인데, 제가 2008년 11월에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부터 합의에 참석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리바다 유㉠㉠에 대한 2009. 9. 15.자 진술조서

문 : 복합상품의 가격을 1,000원 인상하는 것에 대하여 로엔, 엠넷, KTF, KTF뮤직, 아인스(현재 네오위즈벅스), 소리바다와 회의를 하였는가요.
답 : 네. 그렇습니다. 2008. 12. 5.부터 갑자기 복합상품 1,000원 인상 관련하여 회의 안건으로 삼아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문 : 로엔, KTF, 아인스, 엠넷, 소리바다 등은 2009년 Non-DRM 복합상품의 가격을 1,000원씩 올렸는가요.
답 : 네. 그렇습니다. 가격을 실제 1,000원씩 올렸습니다. 소리바다를 제외한 이 사건 관련 사업자들의 경우 1.6.에 일제히 올렸고, 소리바다는 2. 6에 올렸습니다. 소리바다의 경우, 신규 가입자와 기존 사용자를 구별하여 2009. 1. 6. 이후 신규 가입자는 1,000원이 인상된 가격으로 바로 적용을 받도록 하였고, 기존 사용자의 경우 2009. 2.6.부터 인상된 가격을 적용받도록 하였습니다. (중략)
문 : 소리바다가 다른 사업자들보다 1달 늦게 올린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답 : 소리바다의 경우 가격인상 공지는 2009. 1. 6. 에 다른 사업들과 같이 했습니다. 소리바다 내부적으로 로엔, 엠넷, KTF, 아인스 등과 동일하게 가격을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은 2009. 1. 5. 이었습니다. 이미 나머지 회사들이 애초 결정되었던 내용대로 가기로 한 마당에 소리바다만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보복조치가 있을 것이 염려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 실행

1) 2008. 5. 28.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

62 피심인 SKT, 로엔, KTF, KTF뮤직, 아인스디지털, 엠넷은 위에서 본 합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실행하였다.

63 상품 이름은 각기 다르나, Non-DRM 상품의 가격 및 곡수, 복합상품의 가격 및 구성을 다음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하게 하여 판매하였다. Non-DRM 월정액 상품은 40곡 5000원, 150곡 9,000원 이외 변칙상품은 출시하지 않았다. 복합상

품은 위 월정액 서비스 40곡 5,000원, 150곡 9,000원에 스트리밍 서비스를 부가하여 6,000원, 10,000원에 출시하였다.(다.1).①② 관련)

<표 6> Non-DRM 관련 상품 구성 및 가격

	다운로드 40곡	다운로드 150곡	다운로드 40곡 + 스트리밍	다운로드 150곡 + 스트리밍
SKT, 로엔 ⁶⁰⁾	MP3 40	MP3 150	MP3 40 플러스	MP3 150 플러스
KTF ⁶¹⁾	다운로드 파티 소유형 프리 40	다운로드 파티 소유형 프리 150	자유감상파티 소유형 프리 40	자유감상파티 소유형 프리 150
KTF뮤직 ⁶²⁾	FREE 40	FREE 150	없음	없음
엠넷 ⁶³⁾	월 40곡 다운로드	월 150곡 다운로드	월 40곡 다운로드 음악 감상	월 150곡 다운로드 음악 감상
아인스디지탈 ⁶⁴⁾	월 40곡	월 150곡	월 40곡 + 듣기	월 150곡 + 듣기
소리바다 ⁶⁵⁾	다운로드 40곡	다운로드 150곡	다운로드 40곡 + 음악감상	다운로드 150곡 + 음악감상
가격	월 5,000원	월 9,000원	월 6,000원	월 10,000원

⁶⁴ 피심인 회사들은 합의 당시 SKT는 7주 후 즉 7월 말경, KTF는 2008. 8. 1.경, 엠넷과 아인스디지탈은 6월 셋째주나 넷째주 정도에 Non-DRM 상품을 출시하기로 한 바 있고, 이 후 합의한 대로 SKT는 2008. 7. 30.에, KTF는 2008. 8. 1.에, 엠넷은 2008. 6. 16.에, 아인스디지탈은 2008. 6. 17.에 상품을 각각 출시하였다.(다.1).⑥ 관련)

⁶⁵ 곡수제한 상품인 40곡 5,000원, 150곡 9,000원 상품에 대하여 DRM을 적용할 경우 Non-DRM 상품 가격에서 20%를 할인하여 가격을 정하기로 하고, 상품을 출시할지 여부는 각 사의 자율에 맡기기로 합의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다.1).③ 관련)

60) 해당 사이트는 멜론(www.melon.com)이다.

61) KTF가 도시락 사이트(www.dosirak.com)에서 Non-DRM 상품을 처음 출시할 때 명칭은 본문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으나, 그 후 KTF뮤직(현재 KT뮤직)으로 사업이 이관되면서 명칭을 간단하게 MP3 40, MP3 150, 음악감상+MP3 40, 음악감상+MP3 150 으로 상품명을 바꿨다.

62) KTF뮤직은 자체 사이트인 뮤즈를 운영하였으나 KTF로부터 도시락관련 사업을 양수하고 난 후 2009년 말 뮤즈사이트를 폐쇄했다.

63) 해당 사이트는 엠넷(www.mnet.com)이다.

64) 해당 사이트는 벅스(www.bugs.co.kr)이다.

65) 소리바다는 징수규정 개정 후 무제한 음악 다운로드 상품을 변경하면서 Non-DRM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을 결합한 복합상품 만을 2008. 8. 1. 출시하였고, 그 후 다운로드 전용상품은 2009. 2. 6.자로 출시하였다. 해당 사이트는 소리바다(www.soribada.com)이다.

66 이후 KTF는 합의 내용대로 DRM을 적용한 150곡 다운로드 전용 상품과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을 결합한 복합상품을 Non-DRM 상품 가격 대비 20% 할인한 가격으로 출시하였는데, 상품 판매 부진으로 2009. 4. 1.부터 상품 판매를 중단한 사실이 있다. KT F이외 나머지 피심인 회사들은 Non-DRM상품 구성과 동일하면서 DRM을 적용하여 가격을 20% 할인한 상품을 내놓지 않았다.⁶⁶⁾

67 MR상품의 경우 기존 가격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신규 상품이 출시된 이후 가격이 변경되지 않았다.(다.1).② 관련)

68 합의 이전 SKT, KTF, 엠넷, 아인스디지털의 MR 상품가격은 각각 모두 5,000원이었고, 합의 이후에도 5,000원으로 유지되었다.⁶⁷⁾ 온라인 음악서비스 부분 사업양도를 받은 로엔과 KTF뮤직도 위 가격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69 단품 다운로드 서비스⁶⁸⁾의 경우 DRM 음원과 Non-DRM 음원 사이에 가격 차이(100원)를 두어서 판매한다는 합의 내용대로 SKT, KTF, KTF뮤직, 엠넷은 DRM 음원은 기존에 판매하던 가격대로 500원에, Non-DRM음원은 20% 인상하여 600원에 판매를 하였다.⁶⁹⁾(다.1).④ 관련)

70 논의한 가격대인 40곡 5,000원, 150곡 9,000원 상품이외에 Non-DRM 상품의 경우 중간 변칙 상품을 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실제 Non-DRM 상품의 경우 40곡, 150곡 이외에 상품은 나오지 않았다.⁷⁰⁾(다.1).⑤ 관련)

66)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된 것은 소비자가 아무런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Non-DRM 상품에 비해 같은 조건의 DRM 상품은 제약 조건이 많아 상품의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67) 참고로 각 회사별 MR 상품 출시시기는 SKT는 2004. 11. 16. KTF는 2005. 5. 25. 엠넷은 2008년 1월, 아인스디지털은 2008. 5. 28. 이다.

68) ‘곡당 다운로드 서비스’라고도 한다.

69) 아인스디지털은 2008. 5. 28.자 합의와 무관하게 이전부터 단품 다운로드 상품의 가격을 다른 피심인 회사들과 달리 정하고 판매(DRM, Non-DRM 구분없이 가요는 600원, 외국곡은 700원)하여, 단품 다운로드 상품이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다.

70) 이는 서비스 사업자들의 합의 사항이기도 하였고, 이 사건 음원유통사들의 합의사항이기도 하였다. 로엔, 엠넷, KTF뮤직, 아인스디지털은 서비스사업자와 음원유통사 회의에 공통적으로 참여하면서 각 공동행위의 가교 역할을 하였다.

71 Non-DRM 음원은 영구 소유형이라는 상품의 특성상 온라인상에서의 무료 이벤트는 하지 않기로 하였고, 합의대로 피심인 회사들은 온라인 상에서의 무료 이벤트를 하지 않았다.(다.1).⑥ 관련)

72 이 과정에서 SKT⁷¹⁾가 합의 내용과는 다르게 2008. 7. 30. Non-DRM 40곡, 5,000원 상품을 첫달에만 3,000원 할인하여 주는 첫달 2,000원 상품을 출시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 참가 사업자들이 합의내용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중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하여 바로 할인 이벤트를 중단하였던 사실 및 엠넷의 경우에도 온라인상에서 지마켓과의 제휴 무료체험 이벤트를 잠깐 하였으나 타사업자들의 항의로 바로 중단을 한 사실이 있다.

73 신규상품에 대하여는 자동연장 결제할인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기존 상품의 경우에는 자동연장 결제할인을 그대로 두기로 하였는바, 실제로 Non-DRM 신규 상품의 경우 이 사건 온라인음악서비스 합의 사업자들은 자동연장 결제할인을 적용하지 않았고, 기존상품인 MR⁷²⁾의 경우에는 자동연장 결제할인을 그대로 두었다.(다.1).⑦ 관련)

74 이와 관련한 증거는 다음과 같다.

75 세계일보 2008. 6. 24.자 「엠넷미디어, Non-DRM 서비스 개시」 기사(소갑 제60호증, 436쪽), 머니투데이 2008. 6. 24.자 「국내서도 'DRM없는 음악' 시동」 기사(소갑 제61호증, 437쪽), 아시아경제신문의 2008. 7. 29.자 「[IT일반] '프리 DRM'시대 막 올라」 기사(소갑 제62호증, 438쪽), 연합뉴스의 2008. 7. 30.자 「SK텔레콤 Melon DRM Free 상품 출시」 기사(소갑 제63호증, 439쪽), 아이뉴스 2008. 7. 29.자 「SKT도 DRM프리에 동참...음악서비스 지각변동 예고」 기사(소갑 제64호증, 440쪽), 2008. 6.

71) 온라인 음악사이트인 “멜론”은 2008년 까지는 SKT가, 2009년부터는 로엔이 운영하고 있다. 2008년까지 형식적으로는 SKT는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로서, 로엔은 음원권리자로 나뉘어 있었으나, 2009. 1. 1.자로 멜론 사업을 모두 SKT가 로엔에게 양도함에 따라 현재는 로엔이 서비스 사업자인 동시에 음원 유통사업자이기도 하다.

72) 월정액 상품으로 Non-DRM 상품이 출시되기 이전에 자동연장 결제할인이 있던 상품은 MR상품이 유일했다.

18.자 「신탁단체 징수규정안 관련 4개사 회의」 회의록(소갑 제43호증, 419쪽), 아인스디지탈의 2008. 7. 15.자 「2008년 7월 이사회 Agenda」 문서(소갑 제51호증, 426쪽), 전 엠넷 차장 노▲▲의 2008. 7. 29.자 「Non-DRM 할인 보도자료 관련」 전자우편(소갑 제53호증, 431쪽) 및 2008. 7. 31.자 「RE: Non-DRM 할인 상품에 대한 엠넷미디어의 입장」 전자우편(소갑 제54호증, 432쪽) 및 2008. 7. 30.자 「FW : Non-DRM 할인 상품에 대한 엠넷미디어의 입장」 전자우편(소갑 제55호증, 432쪽) 및 2008. 7. 30.자 「Non-DRM 할인 상품에 대한 엠넷미디어의 입장」 전자우편(소갑 제56호증, 433쪽), 엠넷 박♥♥의 2008. 8. 4.자 「RE: Non-DRM 할인 상품에 대한 엠넷미디어의 입장」 전자우편(소갑 제57호증, 434쪽) 및 2008. 8. 1.자 「RE: Non-DRM 할인 상품에 대한 엠넷미디어의 입장」 전자우편(소갑 제58호증, 434쪽), 엠넷 이◆◆, 이♣♣에 대한 2009. 11. 10.자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 278쪽), KTF뮤직 김㉮㉮의 2009. 3. 25.자 「FW: 결재문서 : 도시락 소유형/스트리밍 일부 상품 판매 종료의 건」 전자우편(소갑 제65호증, 441쪽) 등

76 위 관련 증거 중 중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머니투데이 2008. 6. 24.자 「국내서도 ‘DRM없는 음악’ 시동」 기사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메이저 음악포털인 엠넷(www.mnet.com)과 벅스뮤직(www.bugs.co.kr)이 최근 나란히 Non-DRM 다운로드 상품을 출시했다.
(중략)
이들이 내놓은 상품은 40곡(월 5000원), 150곡(월 9000원)으로, 기존 DRM MP3파일보다 저렴하다는 게 장점이다.

아시아경제신문의 2008. 7. 29.자 「[IT일반] ‘프리 DRM’시대 막 올라」 기사

SK텔레콤(대표 김신배)은 29일⁷³⁾ 음악서비스 사이트인 멜론(www.melon.com)을 통해 DRM 프리 상품을 선보였다.
상품은 ‘MP3 40’과 ‘MP3 150’ 두 종류, MP3 40은 월 5000원에 DRM 프리 음원 40곡을, MR3 150은 월9000원에 DRM 프리 음원 150곡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KTF(대표 조영주)도 오는 8월 1일부터 음악포털 도시락(www.dosirak.com)에서 DRM프리 상품을 판매한다. ‘다운로드파티 소유형 프리 40곡’은 월 5000원에 DRM 프리 음원 40곡을, ‘다운로드 파티 소유형 프리 150곡’은 월 9000원에 DRM 프리 음원 150곡을 제공한다.⁷⁴⁾
LG텔레콤(대표 정일재)도 다음 달 중순 뮤직온을 통해 DRM 프리 상품 4종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엠넷미디어(대표 박♥♥)도 지난 6월 ‘DRM 프리’상품을 출시, 이미 2만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했다. 엠넷미디어는 멜론이나 도시락과 같이 DRM 프리 40곡을 월 5000원에,

150곡을 월 9000원에 공급하고 있다.

아이뉴스의 2008. 7. 29.자 「「SKT도 DRM프리에 동참...음악서비스 지각변동 예고」 기사

디지털저작권관리(DRM) 호환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소송 중인 SK텔레콤이 30일 멜론 DRM Free 상품을 출시하기로 해 주목된다.(중략)
SK텔레콤의 DRM 없는 정액 상품은 'MP3 40', 'MP3 150' 두 가지 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MP3 40'은 이용료 월 5천원에 DRM Free 음원 40곡을, 'MP3 150'은 이용료 월 9천원에 DRM free⁷⁵⁾ 음원 150곡을 다운로드 해 이용자가 원하는 기기에서 재생할 수 있다.

아인스디지털 2008. 7. 15. 자 「2008년 7월 이사회 Agenda」 문서

1. 6월 : 40곡/150곡 다운로드 상품 오픈(6/17~)
-. 무제한 임대형 : 6월 26일 재결제 시작
(중략)
■ 엠넷
-. 40곡/150곡 상품 : 6월 16일 오픈
-. 다음에서 배너광고 : 7월 8일부터 게재. 1주에 1,5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추정

전 엠넷 차장 노▲▲의 2008. 7. 29.자 「Non-DRM 할인 보도자료 관련」⁷⁶⁾전자우편

4개사가 그 동안의 경쟁관계에서 벗어나 함께 협의하며 음악시장의 성장을 이룩해보자라는 의지에서 수개월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물로 4개사 합의한 큰 틀의 하나가 무료체험의 지양이 아닌가 합니다.(중략)
현재의 곡수 제한 상품도 과거 대비 큰폭의 할인율을 적용한 상품이며, Non-DRM을 합의하며 여기까지 오는동안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려야 했습니까.
소리바다 및 또 다른 사업자가 첫달 100원만 또는 무료체험 서비스를 할 경우 이를 막을 명분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4개사가 합의했던 무료체험 지양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중략)

Non-DRM 곡수제한 상품의 할인 상품 출시를 중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전 엠넷 차장 노▲▲의 2008. 7. 30.자 「FW : Non-DRM 할인 상품에 대한 엠넷미디어의 입장」 전자우편⁷⁷⁾

포털기획팀 노▲▲입니다.

73) SKT는 2008. 7. 30.에 Non-DRM 월정액제 40곡 5,000원 및 150곡 9,000원 상품은 출시하였는 바, 위 기사는 SKT에서 이를 발표한 날짜와 상품 출시 날짜를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그 아래 기사에 보면 정확하게 2008. 7. 30. 이라고 나와 있다.

74) KTF는 Non-DRM 출시당시 상품명을 다운로드 파티 소유형 프리 40, 다운로드 파티 소유형 프리 150 등으로 하였으나 이후 MP3 40, MP3 150으로 상품명을 변경하였다.

75) 기사에서 'free'를 'Free'로 적기도 하고 'free'로 적기도 하여 나와 있는 대로 발췌하였다.

76) 엠넷 노▲▲이 2008. 7. 29. 오후 7:53에 유△△, 이♠♠, 김♡♡, 성♣♣, 조▽▽, 이병익, 이♣♣, 김은정에게 보낸 메일이다.

77) 엠넷 노▲▲이 2008. 7. 30. 오후 6:22에 박♥♥ 엠넷 대표이사에게 보낸 메일이다.

SKT의 할인이벤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SKT측에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오전⁷⁸⁾에 첫달 2,000원(5,000원 상품을 3,000원 할인함) 상품을 SKT측이 런칭하였고, 이에 금일 당사/KTF/아인스 3개사 협의하여 SKT측에 할인이벤트의 중지를 요청하여 명일까지 할인이벤트를 중지하겠지⁷⁹⁾는 구두연락을 받았지만
 (이하 생략)

엠넷 이◆◆, 이♣♣에 대한 2009. 11. 10.자 진술조서

답 : Non-DRM의 경우 영구 소유형 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볼때 굳이 무료 체험을 할 이유가 없고, 무료 이벤트를 하다 보면 서로 출혈 경쟁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규상품에 대한 첫 30일 무료 이벤트를 금지하였습니다. 이는 온라인에서 행해지는 이벤트로서 순수한 무료 이벤트 및 상품 가격을 할인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여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중략)

문 : 합의 이후 무료 이벤트 관련한 이 사건 각 사업자들의 입장은 어떠하였는가요.

답 : 각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자사 사이트에서 직접 이벤트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엠넷도 자체적으로 엠넷 사이트에서 신규상품 관련한 이벤트를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이트에서 제휴를 통하여 한 적은 있습니다. G마켓 같은 데서 추천을 통해서 경품의 형식으로 1개월 무료체험상품이 지급된 것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다른 업체들이 즉시 합의 내용 위반이라고 항의를 하여 바로 관련 이벤트를 금지하였습니다. 그 후 엠넷은 무료체험이벤트를 더 이상 진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IF류직 김©©의 2009. 3. 25.자 「FW: 결제문서 : 도시락 소유형/스트리밍 일부 상품 판매 종료의 건」 전자우편

수신 및 참조자분들은 아래 품의 내용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원본 메시지-----

(중략)

현재 도시락에서 판매중인 상품 중
 일부 상품(DRM Download 150+스트리밍 상품/ DRM Download 150 상품)에 대해
 - 상품판매 부진으로 인한 관리 MM절약
 - 복잡한 상품 판매로 인한 사용자 혼란 방지를 목적으로 상품 판매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하 생략)

2) 2008년 12월 말 경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

77 피심인 회사들은 복합상품과 관련하여 2009. 1. 6.자로 1,000원씩 가격인상을 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그 후 합의 내용대로 2009. 1. 6.부터 가격을 일률적으로 1,000원씩 인상하여 아래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7,000원,

78) 메일 발신일이 2008. 7. 30. 이므로 ‘오늘’이라 함은 2008. 7. 30.을 가리킨다.

79) “할인하겠지”는 메일에 나와 있는 기재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으로 “할인하겠다”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11,000원에 판매하였다.

<표 7> Non-DRM 복합상품 인상시기 및 인상 후 가격

	인상일	40곡+스트리밍		150곡+스트리밍	
		인상전	인상후	인상전	인상후
SKT, 로엔	2009. 1. 6.	6,000원	7,000원	10,000원	11,000원
엠넷	2009. 1. 6	6,000원	7,000원	10,000원	11,000원
아인스디지털	2009. 1. 6	6,000원	7,000원	10,000원	11,000원
KTF, KTF뮤직	2009. 1. 6	6,000원	7,000원	10,000원	11,000원

78 이와 관련한 증거는 다음과 같다.

79 아이뉴스 2009. 1. 4.자 「새해부터 이통3사 음원서비스 가격 일제히 인상」 기사 (소갑 제81호증, 463쪽), 머니투데이 2008. 12. 30.자 「이통사 음원서비스 가격 몰래 인상?」 기사 (소갑 제82호증, 464쪽), 2009. 1. 6.자 「소리바다 이용권 변경안내」 화면캡처(소갑 제83호증, 466쪽), 2008. 12. 31.자 「박스 공지사항 ; 일부음악상품 할인 종료 안내」 화면 캡처(소갑 제84호증, 468쪽), SKT의 2009. 1. 6.자 「MP3 플러스 상품 정상가 적용」 화면 캡처(소갑 제85호증, 473쪽) 등

80 각 관련 증거 중 중요한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아이뉴스 2009. 1. 4. 자 「새해부터 이통3사 음원서비스 가격 일제히 인상」 기사

SK텔레콤 멜론, KTF 도시락, LG텔레콤 뮤직은 등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음원서비스 가격이 올 해 1월 6일부터 1천원씩 인상된다. 지난 해 할인 프로모션 기간에 가입했던 고객들도 1월 결제때부터는 인상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머니투데이 2009. 12. 30.자 「이통사 음원서비스 가격 몰래 인상?」 기사

멜론, 도시락, 뮤직은 등 이동통신업체들이 운영하는 음원서비스 가격이 내년초부터 일제히 1000원씩 인상된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멜론, 도시락 등 주요 음원서비스업체들이 내년부터 월정액 요금을 1000원 올리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내년부터 월정액 요금 기준으로 40곡 다운로드에 7000원, 150곡 다운로드에 1만 1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같은 금액은 DRM이 해제된 곡을 기준으로 스트리밍

(음악 듣기)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2009. 1. 6.자 소리바다 이용권 가격인상 공지사항

기존에 회원님께서 이용하신 소리바다 음악이용권은 '무제한 음악감상+MP3 다운로드'상품으로 음악감상 상품 정상가 2,000원에서 1,000원을 할인해 드린 가격이며, 음악저작권자의 가격인상 요구에 의해 2009년 1월 6일부터 국내 모든 음악 사이트에서 정상가로 판매됩니다.

2008. 12. 31.자 「박스 공지사항 ; 일부음악상품 할인 종료 안내」 캡처문서

상품 출시 시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상품 오픈 후 1,000원 할인판매 되었던 월 40곡+듣기 자동결제 및 이용권 상품(월 150곡 + 듣기 자동결제 및 이용권 상품 포함)이 2009년 1월 6일부터 자동결제 상품 구매시(재결제 포함) 또는 이용권 상품 신규 구매시 정상금액(아래 상품금액 참조)으로 결제됩니다.

마.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5. (생략)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9. (생략)

②~⑥ (생략)

제6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8. (생략)

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

10. (생략)

② (생략)

제70조(양벌규정) 법인(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81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합의를 하여야 하고, ②그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내용으로 합의할 것

82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 간에 공동으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를 하기로 하는 합의, 즉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의사의 합치는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암묵적 요해 내지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⁸⁰⁾

83 살피건대, 위 2. 가. 내지 라.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들인 SKT, 로엔, KTF, KTF뮤직, 엠넷, 아인스디지탈은 Non-DRM 상품의 종류 및 구성⁸¹⁾, 출시시기, 각 상품의 가격 및 인상폭, 인상시기, 온라인 상에서의 무료체험이벤트 금지 여부, 곡당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Non-DRM 곡과 DRM곡의 가격 차이 정도 및 판매가, 기존 상품인 MR 가격의 가격 유지 및 자동연장 결제할인 계속 적용 여부 등을 공동으로 합의하였음이 인정된다.

84 이는 이 사건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80) 같은 취지의 판례 : 서울고등법원 2001. 10. 16. 선고 2000누16830판결

81) 각 상품을 몇 곡으로 할 지에 대한 문제를 말한다.

정하고 있는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곡수 및 상품의 종류를 한정하는 것을 말한다)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한 것에 해당한다.

나) 하나의 공동행위

85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⁸²⁾

86 위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회사 6개사가 신탁 3단체 징수규정이 Non-DRM 음원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되면서 시장 환경이 급변하게 되자 기존 DRM상품에 대한 가격경쟁력 유지와 매출 감소 최소화라는 단일한 의사와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수시로 모임을 갖거나 메일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상호 의사연락을 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는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다) 경쟁제한성

87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경쟁을 제한한다는 의미는 당해 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82)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참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⁸³⁾

⁸⁸ 이 사건의 경우 피심인 회사들은 온라인음악서비스시장에서 75.7%에 달할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 그 영향력이 상당히 큰 점, 소리바다를 제외한 피심인 회사들 이외 나머지 온라인음악서비스 사업자들의 경우 그 수가 160개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규모가 영세하여 함께 점유율이 약 6%에 지나지 않는 점, 피심인 회사들은 이동통신사업을 하거나 관련 있는 기업(SKT와 로엔, KTF와 KTF뮤직)이거나 대기업의 계열회사(엠넷은 CJ의 계열회사였다) 또는 온라인음악시장형성 초반기부터 서비스를 계속 해 온 사업자(아인스디지털)로서 소비자들에게 인지도가 매우 높다는 점, 온라인음악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원의 질에는 각 사업자들 사이에 크게 차이가 없어 소비자들은 사업자를 선택할 때 인지도에 많은 영향을 받는 점, 피심인 회사들이 음원유통업을 같이 하고 있는 점, 피심인 회사들의 시장점유율 및 사업자 규모 등의 측면에서 피심인 회사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시장 및 나머지 온라인음악서비스 사업자들에게 대한 파급력이 매우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공동행위는 온라인음악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감소시켜 이 사건 피심인 회사들의 의사에 따라 상품의 가격 및 수량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야기한 것으로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⁸⁹ 피심인 회사들의 위 다의 행위는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및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서 그 합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해당된다.

⁸³⁾ 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6521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14564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1058판결 등 참고

사.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1) 온라인음악상품의 거래조건과 가격은 저작권접권자⁸⁴⁾에 의하여 결정되는 비경쟁적 시장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⁹⁰ 피심인 네오위즈인터넷은 2008. 5. 경 부득이 이 사건 합의에 참가하였을 뿐 공동행위를 한 것은 아니며, 상품 가격 등이 동일한 이유는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접권자가 지정한 대로 상품을 판매하였기 때문이므로 공동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온라인 음악상품의 거래조건과 가격은 저작권접권자에 의하여 결정되는 비경쟁적 시장이므로 경쟁제한성도 없다고 주장한다.

⁹¹ 살피건대, 피심인 네오위즈인터넷을 포함한 피심인 회사들은 위 2. 가. 내지 라. 에서 본 바와 같이 4월 초부터 지속적인 모임을 통하여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를 내용으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합의가 있는 이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피심인 네오위즈인터넷의 주장은 이유 없다.

⁹² 설사 피심인 네오위즈인터넷의 주장대로 저작권접권자의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심인 회사들이 별도로 합의를 통하여 가격 및 상품 종류, 규격, 기존상품의 가격 유지 및 자동연장 결제할인 등을 결정한 이상 공동행위 성립에 지장이 없다.⁸⁵⁾

⁹³ 경쟁제한성 판단은 공동행위 합의가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고 이 사건의 합의의 경우 위 바. 2). 나)에서 본 바와 같이 온라인음악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심인 네오위즈인터넷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84) 음반제작자, 음원유통사업자를 말한다.

85) 이와 동일한 사안은 아니나 10개 손해보험사의 부당한 공동행위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행정지도가 있다 하더라도 위 행정지도에 앞서 원고들 사이에 기본보험료에 대한 별도의 합의를 하였다거나 또는 위 행정지도를 기화로 기본보험료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공동행위 성립에 지장이 없음을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12052판결)

2) MR 상품은 이 사건 합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94 피심인 SKT와 KT는 이 사건 합의에 MR 상품 관련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미 MR상품에 대한 가격은 기존에 정해져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논의할 필요도 없었다 할 것이므로 MR상품은 이 사건 합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95 살피건대, 첫째, KTF IE사업본부 음악사업팀의 2008. 5. 15.자 「음악사업 추진현황 및 대응방안」(소갑 제31호증, 378쪽), 엠넷 노▲▲의 2008. 5. 28.자 「RE: Free DRM 상품 서비스 관련」 전자우편(소갑 제37호증, 409쪽), KTF 김♡♡의 2008. 5. 30. 「28일 4사 실무자 회의 결과 보고」 전자우편(소갑 제38호증, 411쪽), 2008. 5. 28.자 「4개사 징수규정안 관련 실무자 회의」 회의록(소갑 제36호증, 407쪽), 음저협 배□□에 대한 2009. 12. 3.자 진술조서(소갑 제13호증, 312쪽), 문화부 저작권산업팀 2008. 2. 27.자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KOMCA, 음저협, 예단연) 전송사용료(무제한 월정액제) 규정 개정안 승인보고」 문서(소갑 제19호증, 338쪽), 엠넷 노▲▲에 대한 2009. 7. 22.자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254쪽), 아인스디지털 유△△에 대한 2009. 8. 18.자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 266쪽), KTF뮤직 이▼▼에 대한 2009. 8. 19.자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272쪽), KTF 김♡♡에 대한 2009. 8. 14.자 진술조서(소갑 제8호증, 287쪽), SKT 이♣♣에 대한 2009. 8. 31.자 진술조서(소갑 제9호증, 292쪽), 엠넷 이◆◆, 이♣♣에 대한 2010. 3. 3.자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 28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 엠넷 차장 노▲▲, 엠넷 이♣♣, KTF 김♡♡, 아인스디지털 유△△, KTF뮤직 이▼▼, SKT 이♣♣ 등 2008. 5. 28. 합의 당사자들이 MR도 관련 합의의 대상이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사실, 둘째, MR은 월정액제 통합서비스로서 이전 징수규정에서는 월정액제는 MR 규정만 유일하게 존재하였던데 반하여 2008년 징수규정은 Non-DRM 월정액 120곡 이하 또는 무제한 서비스를 허용하여 월정액제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통합서비스에 대한 규정도 신설하여 스트리밍 사용료와 다운로드 사용료를 분리정산하도록 만들었는 바, 이는 MR에 대한 경쟁상품이 생기는 것과 동시에 징수방식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업자들은 이에 대처할 필요성이 있었던 사실, 셋째, Non-DRM 음원은 저장기간, 복제 등에 아무런 제약이 없어 DRM 음원에 비하여 활용폭이 넓고 효용이 높아 비슷한 가격일 경우 소비자들은

Non-DRM 상품을 선택하려 할 것이므로 Non-DRM 월정액이 징수규정(특히 Non-DRM 월정액 120곡 5,000원)대로 활성화될 경우 MR(현재 가격 5,000원) 상품의 경쟁력은 매우 약해질 것이라는 사실, 넷째, 그 결과 MR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Non-DRM 월정액의 가격은 높이면서 곡수는 최대한 줄이려 한 사실 및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합의가 도출된 사실, 다섯째, 2008년 개정 징수규정이 Non-DRM 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정⁸⁶⁾하고 이 사용료 금액에서 DRM할인을 해 주도록 하였기 때문에 Non-DRM 상품과 DRM 상품은 자연스럽게 함께 논의 될 수 밖에 없었던 사실, 여섯째, 복합상품(통합서비스 상품) 관련 논의 외에 자동연장 결제할인 관련하여서도 같은 월정액제 상품인 Non-DRM 상품과 MR상품을 같이 다루면서 할인 여부를 결정 하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MR이 합의 대상이 아니라는 피심인 SKT와 KT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1대1 방식의 음원공급조건 협의는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없고 다자간 협의를 할 수 밖에 없으므로 공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⁹⁶ 피심인 SKT는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는 대부분의 음원을 확보하여야 상품에 대한 서비스가 가능하므로 음악유통사업자와 음원사용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1대1 방식으로는 불가능하고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다수의 사업자가 모여 상품에 대한 가격, 상품에 대한 구성 등을 협의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⁹⁷ 살피건대, 각 음원유통사는 보유하고 있는 음원 규모, 선호 음원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거래상 지위에 많은 차이가 있고, 각기 보유음원을 최대한 가장 좋은 조건으로 서비스사업자에게 판매 하고자 하기 때문에 서로 공개하에 계약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⁹⁸ 또한 로엔 허^{㉠㉡}의 2010. 11. 10.자 진술조서(소갑 제17호증, 328쪽), KT뮤직 흥^{㉢㉣}의 2010. 11. 12.자 진술조서(소갑 제15호증, 320쪽), 엠넷 이^{◆◆}, 이^{♣♣}의

86) 저작권 신탁 3단체 징수규정에 의하면 온라인 음악서비스의 경우 Non-DRM을 기준으로 사용료 수준을 정하고 DRM 즉 저작권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위 Non-DRM 사용료 수준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Non-DRM 가격은 DRM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 결국 기존 상품과 관련한 논의를 할 수 밖에 없다.

2010. 11. 10.자 진술조서(소갑 제18호증, 333쪽), 네오위즈인터넷 유△△의 2010. 11. 15.자 진술조서(소갑 제14호증, 316쪽), 소리바다 고Ⓜ의 2010. 11. 11.자 진술조서(소갑 제16호증, 324쪽), 엠넷의 아인스디지탈(현재 네오위즈인터넷)에 대한 2008. 9. 1.자 음원콘텐츠 공급계약서(소갑 제88호증, 484쪽), 아인스디지탈의 소리바다에 대한 2008. 8. 1.자 원천콘텐츠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계약서(소갑 제89호증, 492쪽), 로엔의 소리바다에 대한 2008. 11. 1.자 콘텐츠 제공 계약서(소갑 제90호증, 505쪽), KTF뮤직의 엠넷에 대한 2008. 6. 11.자 디지털 콘텐츠 제공 계약서(소갑 제91호증, 513쪽) 등에 의하면 실제 업무에서도 1대1로 계약이 체결되지 서비스사업자와 다수의 음원유통사업자가 함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없고, 계약시 비밀보호 조항을 두어 음원공급계약에서 비밀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SKT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아. 피심인들의 책임성

99 피심인 회사들의 위 2. 가. 내지 라.의 행위는 국내 온라인음악서비스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위반되고, 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 회사들이 국내 온라인음악서비스 시장에서 75.7%를 점유하고 있어 경쟁제한 효과가 크다는 점, 온라인음악서비스는 전국적인 소비자와 관련된 것으로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100 따라서 피심인 KT와 씨제이이엔엠를 제외하고, 피심인 SKT, 로엔, KT뮤직, 네오위즈인터넷은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또한 담합모임에 대표자로 참석한 피심인 신○○(로엔 대표이사), 피심인 박♀♀(전 KTF의 IE 사업본부장 겸 전 KTF뮤직의 대표이사), 피심인 박♥♥(전 엠넷의 대표이사)은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101 피심인 KT와 씨제이이엔엠은 각각 KTF 및 엠넷과 합병함으로써 법 제55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범위반사업자인 KTF와 엠넷의 범상 책임을 부담하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기 어려우므로⁸⁷⁾ 책임성이 부정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02 피심인 회사들의 온라인음악서비스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75.7%에 달하는 점, 이 사건 공동행위가 경쟁을 저해하는 효과가 크고,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과급효과가 큰 점,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가 필요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피심인 회사들에 대하여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관련규정

103 이 사건 공동행위는 심의일(2011. 2. 23.)까지 종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현재 시행되는 법 제22조, 제5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0. 10.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09호, 이하 '제2010-09호 고시'라 한다)를 적용한다. 다만, 이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SKT와 KT는 종기가 각각 2008. 12. 31., 2009. 3. 31.이므로, 2008. 11. 10.에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18호로 개정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제2008-18호 고시'라 한다)를, 씨제이이엔엠은 종기가 2010. 2. 3.이므로 2009. 8. 20.에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36호로 개정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제2009-36호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되, 제2010-09호 고시의 개정내용 중 SKT, KT, 씨제이이엔엠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2010-09호 고시를 적용한다.

2) 과징금 부과

가) 과징금 부과 여부

87)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도4471판결 참조

104 위 3. 가.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 회사들의 행위가 관련 시장에 미치는 경제제
한효과 및 과급효과의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므로, 피심인 회사들에게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기본과징금의 산정

(1) 관련상품의 범위

105 관련상품 또는 용역이란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
으로서, 그 범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간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거래지역·거래상대방·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
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⁸⁸⁾.

106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피심인 회사들 간 합의의 대상은 온라인음악서비스 상품
중 월정액 상품, 곡당 다운로드 상품이고, 거래지역에 전국적으로 제한이 없으며, 거
래상대방은 온라인음악을 이용하는 소비자이고, 거래단계는 소비자가 음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최종 판매 단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관련 상품 또는 용역
은 Non-DRM 월정액 다운로드 상품 및 복합상품, Non-DRM 월정액 다운로드 상품
에 DRM 조치를 한 상품, MR⁸⁹⁾, 곡당 다운로드 상품(Non-DRM, DRM)이다.⁹⁰⁾

(2) 위반행위의 기간

107 과징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관련매출액은 위반행위 기간 동안의 관련상품의 매
출액이라 할 것이므로 위반행위 기간을 확정하여야 한다.

88) 동일한 취지의 판례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10387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두7456
판결 등

89) 월정액 상품에 해당한다.

90) 이 사건 합의대상에는 음원공급조건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이는 음원유통사업자들(로엔, KT뮤직, 벅스,
엠넷을 포함한 디발협 회원사들)이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합의 내용을 확인하는 행위로 볼 수 있
으므로 여기서는 따로 합의대상으로 삼아 관련매출액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다. 위 음원공급 조건과 관
련한 음원유통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별건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108 공동행위는 합의함으로써 성립하고 법상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의 성격과 부당이득 환수적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개시일 즉 공동행위 시기는 합의일을 기준으로 한다.⁹¹⁾

109 피심인 회사들은 2008. 5. 28. 이화여자대학교 SK텔레콤관에서 이 사건 합의를 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반행위 개시일은 2008. 5. 28.이다. 다만, 2008. 12. 31. SKT로부터 영업을 양수받은 로엔의 경우 위반행위 개시일은 2009. 1. 1. 이 된다.

110 공동행위 종료일은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터잡은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그 합의에 터잡은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⁹²⁾한다. 실행행위 종료 시기는 그 판단기준이 공동행위 사업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인데, 일부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에서 탈퇴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합의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등 합의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전부의 경우에는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자의 판단에 따라 합의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등 합의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업자들 사이의 반복적인 가격경쟁 등으로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⁹³⁾

111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합의 및 그에 터잡은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이 공동행위의 종료일이라 할 것이다.

91) 동일한 취지의 판례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판결

92) 동일한 취지의 판례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두2852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판결 등

93) 동일한 취지의 판례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2586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두 19584판결 등

112 살피건대, 피심인 씨제이이엔엠을 제외한 이 사건 피심인 회사들 중 일부라도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에서 탈퇴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이 사건 피심인 회사들 전부가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심인 회사들 사이에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일정기간 계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113 이와 관련하여 KT뮤직의 경우 공동행위에 따른 상품 이외 신규 상품을 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고, 신규상품의 구성이나 가격이 합의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상품 또는 가격으로 보기에다 어려워 공동행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다.

114 이에 비하여 씨제이이엔엠은 2010. 2. 3. 나머지 피심인 회사들에 대하여 공동행위 중단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엠넷의 2010. 2. 3.자 「건전하고 투명한 공정거래 질서확립 건」 문서(소갑 제87호증, 483쪽)]되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를 종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공동행위 종료일은 공동행위 중단에 대한 의사를 표시한 날인 2010. 2. 3.이라 할 것이다.

115 한편 SKT는 2008. 12. 31.에 로엔에, KTF를 흡수합병한 KT의 경우 KTF가 2009. 3. 31.에 KTF뮤직에 각 이 사건 관련 사업을 양도하여 공동행위의 행위주체로서의 지위를 벗어나게 되었으므로 각기 사업을 양도한 날이 공동행위 종료일이 된다. 따라서 SKT는 2008. 12. 31.이, KT는 2009. 3. 31.이 공동행위 종료일이라 할 것이다.

(3) 관련매출액

116 위반행위 기간 동안 피심인 회사별 관련 매출액은 다음 <표 9>와 같고, 이 금

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표 9> 피심인 회사별 관련매출액

(단위 : 천 원)

피심인	Non-DRM		Non-DRM에 DRM조치 한 상품	MR	단품		계
	다운로드	복합상품			DRM	Non-DRM	
SKT	1,549,344	1,308,003	-	18,046,531	1,427,291	1,652,122	23,983,291
로엔	2,743,760	38,763,962	-	63,004,478	2,512,497	12,569,213	137,593,910
KT	574,472	478,864	101,586	7,096,390	247,796	486,303	8,985,411
KT뮤직	16,227,458	다운로드와 구분곤란	-	9,617,545	1,557,701	2,461,843	29,864,547
씨제이 이엔엠	10,097,954	6,594,620	-	724,164	1,255,998	1,099,286	19,772,022
네오위즈 인터넷 ⁹⁴⁾	23,854,089	다운로드와 구분곤란	-	1,790,363	-	-	25,644,452

* 자료출처 : 피심인 회사들 제출자료

(4) 기본과징금 산정

117 기본과징금은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사건 공동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과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가 ‘매우 중대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제2010-09호 고시⁹⁵⁾ IV. 1. 다. (1). (가).의 규정에 의거 7~1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되, 한국 음악산업의 영세성 등을 고려하여 7%를 부과기준율로 적용한다.

118 따라서 피심인 회사별 기본과징금은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피심인 회사별 기본과징금

(단위 : 천 원)

피심인	관련매출액	부과기준율	기본과징금
SKT	23,983,291	7%	1,678,830

94) 네오위즈인터넷은 다른 피심인 회사들이 2008. 5. 28. 합의 이후에 단품 DRM은 500원, Non-DRM은 600원에 판매한 것과 달리, 합의 이전부터 단품 다운로드 상품은 DRM, Non-DRM 구분없이 가요는 600원, 외국곡은 700원에 판매하여 단품다운로드 상품을 관련매출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또한 2008. 5. 28. 이전부터 판매하던 월정액 무제한 Non-DRM상품, 월정액 무제한 DRM 상품도 관련매출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95) 종전의 고시(제2008-18호 고시, 제2009-36호 고시)도 제2010-9호 고시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로엔	137,593,910	7%	9,631,573
KT	8,985,411	7%	628,978
KT뮤직	29,864,547	7%	2,090,518
씨제이이앤엠	19,772,022	7%	1,384,041
네오위즈인터넷	25,644,452	7%	1,795,111

다)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1) SKT

119 SKT는 과거 3년간(2009. 3. 23.부터 2006. 3. 22.까지) 범위반횡수가 4회, 누산벌점이 9.5점⁹⁶⁾이므로 제2008-18호 고시 IV. 2. 나. (1). (나)의 규정⁹⁷⁾을 적용하여 기본과징금액의 30%를 가중한다.

(2) KT

120 KT는 과거 3년간(2009. 3. 23.부터 2006. 3. 22.까지) 범위반횡수가 9회, 벌점이 12점⁹⁸⁾이므로 제2008-18호 고시 IV. 2. 나. (1). (나)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본과징금액의 45%를 가중한다.

(3) 로엔, KT뮤직, 씨제이이앤엠, 네오위즈인터넷

96) SKT는 ‘에스케이텔레콤(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조치일 2009. 1. 21., 과징금 2.5점), ‘에스케이텔레콤(주)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조치일 2008. 3. 28., 시정명령 2점), ‘에스케이텔레콤(주)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등에 대한 건’(조치일 2007. 2. 6. 과징금 2.5점), ‘3개 이동통신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조치일 2006. 7. 27., 과징금 2.5점) 등 총 범위반횡수는 4회, 누산벌점은 9.5점이다.

97) 제2010-09호 고시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98) KT는 ‘(주)케이티프리텔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조치일 2009. 3. 11., 시정명령 2점), ‘(주)케이티프리텔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조치일 2007. 3. 5., 경고 0.5점), ‘3개 이동통신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조치일 2006. 11.2., 과징금 2.5점), ‘(주)케이티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조치일 2007. 6. 27., 경고 0.5점), ‘(주)케이티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조치일 2007. 8. 1., 경고 0.5점), ‘(주)케이티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조치일 2007. 2. 27., 경고 0.5점), ‘(주)케이티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건’(조치일 2006. 11. 28., 경고 0.5점), ‘3개 이동통신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조치일 2006. 7. 27., 과징금 2.5점) 등 범위반횡수가 KTF의 범위반횡수와 합하여 총 9회, 누산벌점은 12점이다.

121 기타 피심인 회사들에 대한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과징 금액과 동일하다.

<표 11> 피심인 회사별 의무적 조정과징금

(단위 : 천 원)

피심인	기본과징금	가중률	의무적 조정과징금
SKT	1,678,830	30%	2,182,479
로엔	9,631,573	-	9,631,573
KT	628,978	45%	912,018
KT뮤직	2,090,518	-	2,090,518
씨제이이엔엠	1,384,041	-	1,384,041
네오위즈인터넷	1,795,111	-	1,795,111

라)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1) SKT

122 SKT는 이 사건 공동행위에 임원(이ⓈⓈ C&L사업본부장)이 직접 관여하였으므로 제2008-18호 고시 IV. 3. 나. (6).의 규정을 적용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액의 10%를 가중한다. 그러나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이 인정되므로 위 고시 IV. 3. 다. (3).의 규정을 적용하여 20%⁹⁹⁾를 감경한다.

(2) 로엔

123 로엔은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표이사가 직접 관여하였으므로 제20010-09호 고시 IV. 3. 나. (5).의 규정을 적용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액의 10%를 가중한다. 그러나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이 인정되므로 위 고시 IV. 3. 다. (3).의 규정을 적용하여 20%를 감경한다.

99) 제2010-09호 고시는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경우’에는 30% 이내 감경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어 제2008-18호 고시보다 감경률 한도가 10% 상향되었으나, SKT의 경우는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20%만 감경한다.

(3) KT

124 KT는 이 사건 공동행위에 임원(KTF의 박☞☞ IE 사업본부장)이 직접 관여하였으므로, 제2008-18호 고시 IV. 3. 나. (6).의 규정을 적용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액의 10%를 가중한다. 그러나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이 인정되므로 위 고시 IV. 3. 다. (3).의 규정을 적용하여 20%¹⁰⁰⁾를 감경한다.

(4) KT뮤직

125 KT뮤직은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표이사(KTF뮤직의 박☞☞ 대표이사)가 직접 관여하였으므로 제2010-09호 고시 IV. 3. 나. (5).의 규정을 적용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액의 10%를 가중한다. 그러나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이 인정되므로 위 고시 IV. 3. 다. (3).의 규정을 적용하여 20%를 감경한다.

(5) 씨제이이엔엠

126 씨제이이엔엠은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표이사(엠넷의 박♥♥ 대표이사)가 직접 관여하였으므로 제2009-36호 고시 IV. 3. 나. (5).의 규정을 적용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액의 10%를 가중한다. 그러나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이 인정되므로 위 고시 IV. 3. 다. (3).의 규정을 적용하여 20%를 감경한다.

(6) 네오위즈인터넷

127 네오위즈인터넷은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표이사(아인스디지털의 한◇◇ 대표이사)가 직접 관여하였으므로 제2010-09호 고시 IV. 3. 나. (5).의 규정을 적용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액의 10%를 가중한다. 그러나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면서 다른 피심인 회사들보다 더 적극적

100) 각주 100)과 같다.

으로 협조한 점을 고려하여 위 고시 IV. 3. 다. (3).의 규정을 적용하여 30%를 감경한다.

128 위 내용을 반영한 피심인 회사들의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다음 <표12>와 같다.

<표 12> 피심인 회사별 임의적 조정과징금 (단위 : 천 원)

피심인	기본과징금	감경률	임의적 조정과징금
SKT	2,182,479	10%	1,964,231
로엔	9,631,573	10%	8,668,415
KT	912,018	10%	820,816
KT뮤직	2,090,518	10%	1,881,466
씨제이이엔엠	1,384,041	10%	1,245,636
네오위즈인터넷	1,795,111	20%	1,436,088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129 KT뮤직, 씨제이이엔엠, 네오위즈인터넷은 직전 3개년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¹⁰¹⁾이므로 제2010-09호 고시 IV. 4. 가.의 규정을 적용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액의 50%를 감경한다. 따라서 피심인 회사들에 대한 부과과징금은 다음 <표 13>과 같다.

<표 13> 피심인 회사별 부과과징금

피심인	임의적 조정과징금(천 원)	감경률	부과과징금(백만 원) ¹⁰²⁾
SKT	1,964,231	-	1,964
로엔	8,668,415	-	8,668
KT	820,816	-	820
KT뮤직	1,881,466	50%	940
씨제이이엔엠	1,245,636	50%	622
네오위즈인터넷	1,436,088	50%	718

101) 최근 3년간의 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한 KT뮤직의 적자규모는 11,640백만 원(2007년말 적자 12,819백만원, 2008년말 적자 2,897백만 원, 2009년말 적자 5,436백만 원), 엠넷은 53,471백만 원(2007년말 적자 34,367백만 원, 2008년말 적자 61,768백만 원, 2009년말 적자 837백만 원), 벅스는 5,783백만 원(2007년말 적자 43,695백만 원, 2008년말 흑자 4,096백만 원, 2009년말 흑자 6,051백만 원)이다.

102) 제2010-09호 고시 IV. 4. 바.의 규정에 의해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산정한다.

4. 결론

130 피심인 회사들의 위 2. 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피심인 회사들에 대한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제21조,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각 규정을 적용하고, 피심인 SKT, 로엔, KT뮤직, 네오위즈인터넷, 신○○, 박♀♀, 박♥♥에 대한 고발에 대하여는 법 제70조 및 제66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1년 6월 10일

의	장	부위원장	정 재 찬
		주심위원	김 학 현
		위 원	장 용 석
		위 원	안 영 호
		위 원	양 명 조
		위 원	이 흥 권
		위 원	전 성 훈
		위 원	최 종 원